2023 TR-15

# 교육환경 보호제도 운영 안내서

교육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안내서

본 안내서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및 승인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운영·관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다만, 교육환경보호제도의 특성상 학교의 급,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유형 및 범위,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조건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반적인 조건을 고려한 업무절차 등을 포함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안내서를 추가 보완·발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차 례


Ⅰ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 ····· 1

1. 주요 내용 ····· 3
2. 대상, 시기 및 절차 ····· 4
3. 제2차 교육환경 보호 기본계획('23~'27) 주요 내용 ····· 7

Ⅱ 교육환경보호위원회 ····· 11

1. 주요 내용 ····· 13
2.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 13
3.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 15
4. 기타사항 ····· 17

Ⅲ 교육환경평가 ····· 19

1. 주요 내용 ····· 21
2. 교육환경평가 대상, 시기 ····· 25
3. 교육환경평가 기준 ····· 29
4. 교육환경평가 절차 ····· 35
5. 교육환경평가 유의사항 ····· 43
6. 관련 서식 등 ····· 48

Ⅳ 사후관리 ····· 59

1. 주요 내용 ····· 61
2. 사후관리 절차 ····· 62
3. 관련 서식 등 ····· 69

Ⅴ 교육환경보호구역 ····· 79

1. 주요 내용 ····· 81
2.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관리 등 ····· 85
3.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방향 ····· 89
4. 관련 서식 등 ····· 96

Ⅵ 교육환경정보시스템 ····· 101

1. 주요 내용 ····· 103
2.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및 활용 ····· 105
3.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기반 업무 처리 절차 ····· 110

Ⅶ 기타 ····· 115

1. 벌칙 및 과태료 ····· 117
2. 권한의 위임·위탁 ····· 119

■ 부록 ····· 121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 123
2.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153
3.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안) ····· 175
4. 질의회신 사례 ····· 193
5. 공사에 관한 설명 ····· 203

# 표 차례


〈표 1〉 제1차, 제2차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 비교 ····· 3
〈표 2〉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절차 등 ····· 6
〈표 3〉 절차별 수행 주체 및 내용 ····· 23
〈표 4〉 주요 변경 내용 전·후 비교 ····· 24
〈표 5〉 교육환경평가 대상 ····· 25
〈표 6〉 교육환경평가 시기 ····· 28
〈표 7〉 교육환경평가 대상 및 기준 ····· 29
〈표 8〉「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상세기준 ····· 32
〈표 9〉 판정방법 및 평가기준 적용 구분 ····· 34
〈표 10〉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처리 항목 ····· 41
〈표 11〉 교육환경평가서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에 대한 검토 체크리스트(예시) ····· 45
〈표 12〉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목차(예시) ····· 57
〈표 13〉 이행사항 조사·확인 시기 및 방법 ····· 65
〈표 14〉 시기에 따른 주체별 사후관리 내용 ····· 65
〈표 15〉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83
〈표 16〉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 105
〈표 17〉 정보관리시스템 메인페이지 메뉴 소개 ① ····· 106
〈표 18〉 정보관리시스템 메인페이지 메뉴 소개 ② ····· 107
〈표 19〉 정보관리시스템(평가현황〉사업상세페이지〉평가진행처리) 단계 소개 ····· 109
〈표 20〉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등록, 공개 절차 각 단계 설명 ····· 111
〈표 21〉 정보관리시스템 등록, 공개 절차 각 단계 설명(교육(지원)청) ····· 112
〈표 22〉 벌칙 및 과태료 내용 ····· 117
〈표 23〉 권한 위임·위탁 입법 전·후 비교 ····· 120

# 그림 차례


[그림 1] 제2차 교육환경 보호 기본계획('23~'27) 주요 내용 ····· 7
[그림 2] 교육환경평가 업무 절차 ····· 22
[그림 3] 사후관리 절차도 ····· 68
[그림 4] 학교 보호구역 범위의 개념도 ····· 81
[그림 5]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철거명령 절차 ····· 88
[그림 6] 표지판 기본 디자인 ····· 90
[그림 7] 픽토그램 디자인 ····· 91
[그림 8] 교육환경보호구역도 결합 설치 형태 ····· 91
[그림 9] 배너디자인 형태(안) ····· 92
[그림 10] 표지판 설치 유형 ····· 93
[그림 11] 표지판 설치/제작/유지관리 흐름도 ····· 95
[그림 12] 교육환경정보시스템(https://eeis.schoolkeepa.or.kr) ····· 103
[그림 13]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https://epss.schoolkeepa.or.kr/mgr) ····· 104
[그림 14]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시스템(https://cuzm.schoolkeepa.or.kr) ····· 104
[그림 15]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메인페이지 화면 구성 ····· 106
[그림 16]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평가현황 화면 구성 ····· 107
[그림 17]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평가 진행 처리 단계 ····· 108
[그림 18]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기반 업무 처리 절차도 ····· 110
[그림 19]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기반 업무 처리 절차(교육(지원)청) ····· 112
[그림 20] 과태료 부과절차 예시도 ····· 118

# I

#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

1. 주요 내용
2. 대상, 시기 및 절차
3. 제2차 교육환경 보호 기본계획 ('23~'27) 주요 내용

# Ⅰ.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

## 1 주요 내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교육환경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환경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교육감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또는 사업의 방향성을 확보하도록 함
- 「교육환경법」 시행에 따라 제1차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18~'22)이 수립되어 5년간 실행되었으며, 기간만료 도래에 따라 제2차 교육환경 보호 기본계획('23~'27)을 수립함

〈표 1〉 제1차, 제2차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 비교

| 구분 | 제1차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 | 제2차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 |
|---|---|---|
| 비전 | 학생이 건강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미래를 보호하는 교육환경, 함께 만드는 교육환경 |
| 전략 및 목표 | -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br>- 안정적·전문적 지원체계 구축<br>- 객관적·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목표〉<br>- 양질의 교육환경이 보장되는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br>- 학교 환경의 공공성 강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br>- 미래 지향적 교육환경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정부"<br><br>〈전략〉<br>1. 법적·제도적 기반 안정화<br>2. 교육환경보호 지원체계 고도화<br>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br>4. 디지털 교육환경 정보시스템 확대 |

## 2 대상, 시기 및 절차

### 가.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

#### 1) 시기 및 절차

- [관련 조항] 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 [주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기한]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확정
- [수립 또는 변경]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기관·단체의 장, 교육감에게 통보
- [변경]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기관·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가능

#### 2) 내용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 기본방향**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수준의 중장기적 비전 및 목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시·도 수준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 기본정책의 확산 및 실행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 등 국가 수준의 시책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제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업무 관계자 교육 시행 방안
-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예시)**

-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고도화, 합리적 운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수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전문기관 운영, 정보화 등에 의한 전문적·지속적 지원체제 구축
- 교육환경 보호 관련 분쟁 해소 또는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방안

## 나.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

### 1) 시기 및 절차

- [관련 조항] 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 [주체] 교육감이 1년마다 시행계획 수립
- [제출]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심의]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 [시행결과 제출] 교육감은 지난해 시행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2) 내용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시·도 수준의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인력 및 조직,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시행계획의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 교육환경 보호 사업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예시)**

- 교육환경보호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처리 방안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 관계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방안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 수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 교육환경 보호 관련 분쟁 해소 또는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방안

〈표 2〉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절차 등

| 구분 |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 |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 |
|---|---|---|
| 수립권자 | 교육부장관 | 교육감 |
| 수립주기 | 5년 | 1년 |
| 수립/제출일 | 개시 연도 전년도 10월 31일 | 시행 전년도 12월 31일 |
| 절차 | 기본계획 확정<br>→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 | 위원회 심의<br>→ 시행계획 확정<br>→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 조치 | - |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 내용 | • 정책 기본방향<br>•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br>•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br>• 교육환경 보호 사업 재원조달계획<br>•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3 제2차 교육환경 보호 기본계획('23~'27) 주요 내용

### 가. 비전과 목표

- 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미래를 보호하는 교육환경, 함께 만드는 교육환경'에 해당
- 3대 전략을 '법적·제도적 기반 안정화, 교육환경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8개 대과제에 따라 17개 세부과제 제시

**비 전**: 미래를 보호하는 교육환경, 함께 만드는 교육환경

**핵심가치**: 꿈·희망 – 건강·안전 – 상생·협력

**목 표**
① 양질의 교육환경이 보장되는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② 학교 환경의 공공성 강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
③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정부"

**3대 전략 및 주요 과제**

| | | |
|---|---|---|
| 1 | 법적·제도적 기반 안정화 | ◦ 교육환경보호체계 개편 및 관련 정책 기반 강화<br>◦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 사후관리 확대<br>◦ 교육환경평가 대해에제 안착 기반 마련 |
| 2 | 교육환경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 ◦ 교육환경보호 정책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br>◦ 교육환경보호 업무 전문성 제고<br>◦ 교육환경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대 |
| 3 |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 학교내 교육환경관리 강화<br>◦ 학교주변 교육환경관리 강화 |

[그림 1] 제2차 교육환경 보호 기본계획('23~'27) 주요 내용

## 나. 전략 및 과제

### 1) 법적·제도적 기반 안정화

#### 교육환경보호체계 개편 및 관련 정책 기반 강화

- 교육환경 보호 정책 추진체계 개편(교육부, 시·도교육청)
  - 학교 공기질·조도·소음 등 모니터링 정보, 교육환경평가 정보 등을 담은 교육환경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중심 업무관리 방안 제시
  - 교육환경 보호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 지원체계 구축
- 교육환경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교육부, 시·도교육청)
  -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 재평가 대상, 변경협의 등 제도 보완
  -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개선
  - 승인기관 및 사업시행자 간 교육환경평가 사전협의제, 교육환경평가 전 처리과정 온라인 공개를 통한 효율적 업무처리 방안 마련
- 교육환경보호 정책의 R&D 역량 강화(교육부)
  - 교육환경 실태조사 추진, 통합적 교육환경 관리방안 마련
  - IOT 기반 교사 내 환경영향 모니터링 표준 마련 및 빅데이터 수집·구축
  - 교육환경 영향 요인에 대한 조사·연구·모니터링, 학생맞춤형 기술개발

####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 사후관리 확대

-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확대·강화(시·도교육청)
  - 공사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영향) 모니터링 및 관리등급별 조사 확대
  - 학교 주변 공사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조사·확인하는 현장 모니터단 운영, 교육청/지자체/학교/전문기관 간 사후관리 협업체계 구축
  - 사업승인 정보 DB화, 교육청 및 사업자 매뉴얼 보급 및 전문기관 지원체계 구축 등 사후관리 이행지원 강화
-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 표준디자인 적용 및 우수사례 홍보(교육부)
  -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 BI 디자인 관련 자료 보급, 자율적인 사후관리 현장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교육환경평가 대행체제 안착 기반 마련

- 교육환경평가 대행제도 법제화 추진(교육부)
  - 대행자 등록요건(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 대행절차, 대행비용 등 마련 및 법제화
- 교육환경평가 민간전문가 양성(교육부)
  - 교육환경평가사 민간 자격제도 도입, 민간 전문인력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환경평가 대행업무 및 평가과정 참여 확대(교육부)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평가정보 공개 및 상시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 2) 교육환경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 교육환경보호 정책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 국가 및 지역의 정책추진 협력 강화(교육부, 시·도교육청)
  - 교육환경 보호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참여 및 협력 강화
- 교육환경 관련 협력 네트워크 강화(교육부, 시·도교육청)
  - 교육부/교육청/학교/전문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유기적 협력
  - 학교 및 주변 교육환경 위험요소에 대한 단위학교 지원체계 강화(정보교류 활성화, 모니터링 강화, 정책자료 보급 및 전문지원 등)
  - 정책지원 컨설팅단 운영 및 교육환경 통합관리 전문 지원

### 교육환경보호 업무 전문성 제고

- 교육환경보호 조직·인력 역량 강화(시·도교육청)
  - 교육환경 보호 행정수요에 대응 가능한 업무추진체계 구축(전문인력 확보, 담당공무원의 전문직위 운영 등)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기능 강화(교육부, 시·도교육청)
  - 보호위원회 위원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지원, 위원회 운영 안내서 개발·보급

### 교육환경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대

- 디지털 기반 스마트업무지원시스템 구축(교육부, 전문기관)
  - 교육환경평가시스템과 교육청 행정망을 연계하여 업무처리 과정 온라인화

◎ 시스템 고도화 및 DB 자료 확대·구축(교육부, 전문기관)
- 공공클라우드 기반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개편 및 기능 고도화
- 교육환경평가서 DB자료 확대·구축, 평가정보와 공간정보 간 연계·제공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점검 내실화 방안

###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 내 교육환경 관리 강화

◎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 강화(교육부, 시·도교육청)
- 학교 공기질 측정 및 측정결과에 대한 시스템 업무체계 마련
- 학교 공기질 등 점검현황을 학교알리미 정보공시와 연계하여 공개범위 확대
- 학교 석면 건축물의 현장점검 또는 전문조사 업체 의뢰를 통한 관리 강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강화 및 학교석면 관리매뉴얼 개선 등 추진
- 지하수 사용 학교의 상수도 인입 추진, 먹는 물 공급시설 점검·관리 강화
- 소음피해(도로, 철도, 항공기, 공사장 등)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방음시설 설치·개선, 관계부처 공조 강화

#### 학교 주변 교육환경 관리 강화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강화(교육부, 시·도교육청)
- 학교 인근의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상시점검 강화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조치 강화를 위한 인·허가기관, 경찰서와 협조체계 형성
- 교육환경보호구역 민원자료 및 행정쟁송자료 DB 구축·제공

◎ 교육환경평가 제도운영 실효성 강화(교육부, 시·도교육청)
- 현지조사에 기반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검토·심의 방안 마련
- 사업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항목 및 기준 적용방안 마련, 객관적 평가방법 개발

# Ⅱ

# 교육환경보호 위원회

1. 주요 내용
2.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3.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기타사항

# Ⅱ. 교육환경보호위원회

## 1 주요 내용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2017.2.4. 삭제)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중 교육환경 평가와 관련된 업무가 2017년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법」 제5조(시·도 교육 환경보호위원회 등)의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었으며,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있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됨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 심의 등을 담당하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 및 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의 학교용지 선정을 위한 심의를 담당함

## 2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 가. 기능

- [관련 조항] 법 제5조
- 교육환경 보호 시책 심의
- 교육환경 보호 시행계획 심의(법 제4조제2항)
- 교육환경평가서 심의(법 제6조제3항)
- 평가서 이의신청 심의(시행령 제18조)

-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명령 심의(시행령 제20조제2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나. 운영

- [관련 조항] 법 제5조, 시행령 제5조·제8조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
  -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 [임기]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대상] 위원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
  - 시·도교육청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개의,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상대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 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의결
- [수당, 여비]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경비 지급 가능(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제외)

### 다. 분과위원회

- [관련 조항] 시행령 제5조제4항·제5항
- [운영]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 가능(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구성)
- [내용] 시·도위원회 심의사항 중 요청한 사항 검토
- [보고] 검토결과를 시·도위원회에 보고
  - 의결기능은 시·도위원회에 있고 분과위원회는 검토권만 있음

### 라. 운영세칙

- [관련 조항] 시행령 제9조
- [내용] 시·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방법] 시·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재량 사항)

## 3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 가. 기능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0조
- 교육환경평가서 심의(유치원, 대안학교 및 대학(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내 운영하기 위한 용지선정)의 학교용지 선정시에 한함)
- 상대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결과(권고사항 포함)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제출명령 심의(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 나. 운영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1조·제14조
-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하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총수의 1/2 이상이 되어야 함
-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대상] 위원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
  - 교육감 소속 공무원, 관련기관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현재 교육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가능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등 교육감의 선행조치 필요
- [개의,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의견청취] 상대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장 출석 및 의견청취 가능
- [참관]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와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허용 가능
  - 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참관 제한 가능
- [이의제기] 학교의 장은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재심의 요청 가능, 지역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 [수당, 여비]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경비 지급 가능(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제외)

## 다. 운영세칙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5조
- [내용] 지역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방법] 교육감이 정함(재량 사항)

## 4 기타사항

###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척] 시·도위원회/지역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
  -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회피] 시·도위원회/지역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에서 스스로 회피
- [기피] 안건 당사자가 시·도위원회/지역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가능, 시·도위원회/지역위원회 의결로 결정

### 나. 위원의 해임·해촉

- [해임·해촉] 시·도위원회/지역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시·도위원회/지역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심의·의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지역위원회만 해당)

# Ⅲ

# 교육환경평가

1. 주요 내용
2. 교육환경평가 대상, 시기
3. 교육환경평가 기준
4. 교육환경평가 절차
5. 교육환경평가 유의사항
6. 관련 서식 등

# Ⅲ. 교육환경평가

## 1 주요 내용

### 가.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법」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는 환경 영향을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함

**용어의 정의**

- **"전문기관"**은 「교육환경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정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을 뜻함
- **"운영기관"**이라 함은 「교육환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육환경정보 시스템을 위탁 구축·운영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을 뜻함
-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제도(교육환경평가서 전문검토, 교육환경평가서 공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등)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뜻함
-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를 뜻함
-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란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칭함
-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란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칭함

## ◎ 절차별 수행 주체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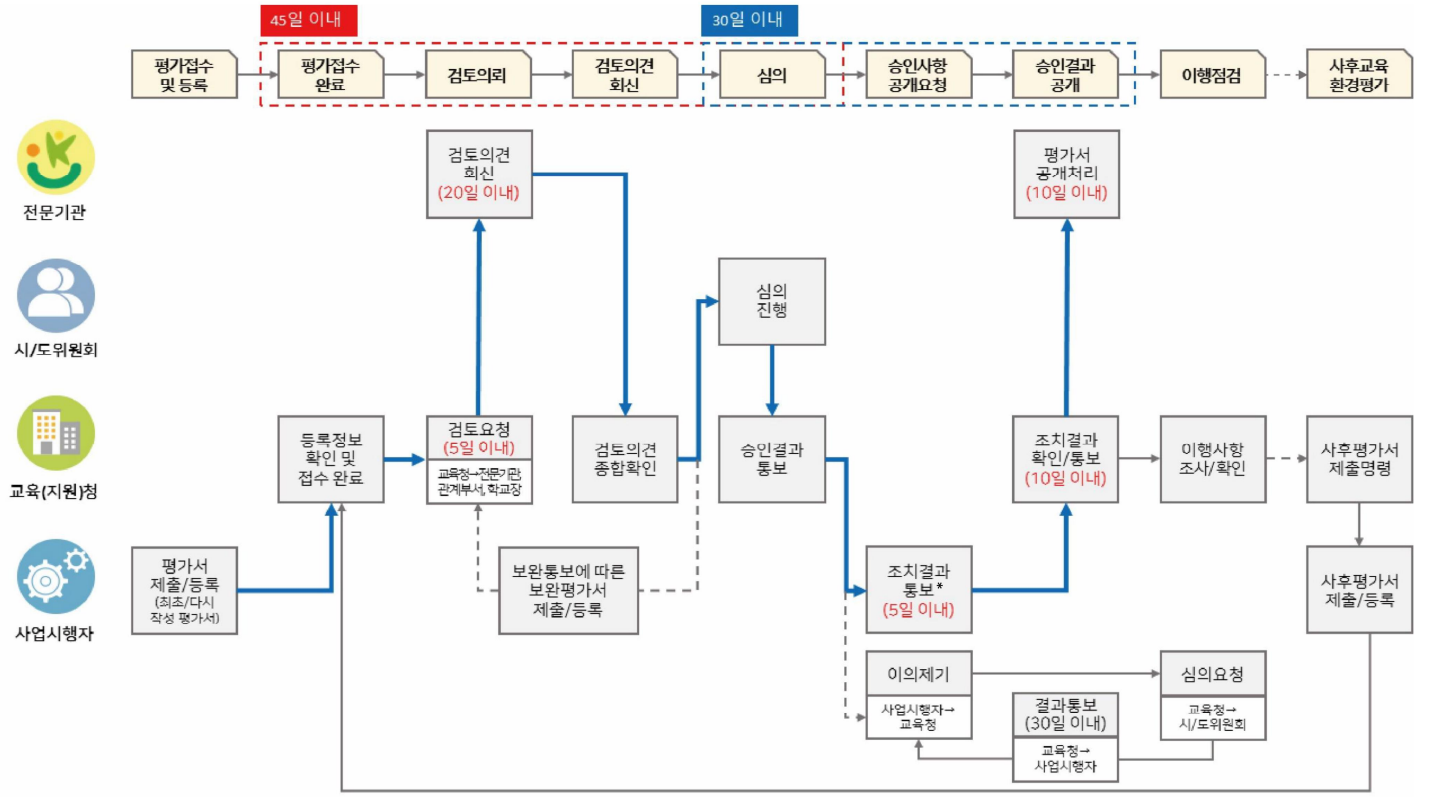


* 심의결과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권고내용 이행계획을 최종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하고, 승인 교육청 제출 이후 공개절차 수행
※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 경우, 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의 학교용지 선정의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교육환경법」 제5조제8항, 제6조제4항).

[그림 2] 교육환경평가 업무 절차

〈표 3〉 절차별 수행 주체 및 내용

| 단계 | 수행 내용 | | 주체 | 기간 |
|---|---|---|---|---|
| 교육환경평가 제출 및 등록 | 평가서 작성 | | 사업시행자 | |
| | 평가서 제출 및 등록 | | 사업시행자 → 교육감(교육청) | 즉시 |
| 교육환경평가 접수 완료 | 등록 정보 확인 및 접수 완료 처리 | | 교육감(교육청) | |
| 검토의뢰 | 평가서 검토 요청 | | 교육감(교육청) → 전문기관, 관계부서, 학교장 |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 | ※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 경우 지역위원회 심의 필요 | | | |
| 검토의견 회신 | 평가서 검토 및 의견 회신 | | 전문기관, 관계부서, 학교장 |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 | 〈필요 시〉 | | | |
| | 평가서 보완 작성 | 평가서 다시 작성 | | |
| 심의 | 평가서 심의 진행 | | 시·도위원회 | |
| | ※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의 학교용지 선정의 경우 지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서 승인 가능 | | | |
| 승인결과 통보 | 승인결과 통보 | | 교육감(교육청) → 사업시행자, 행정기관의 장 | 45일 이내 |
| | 〈승인〉 조치결과 통보 | 〈불승인〉 이의 신청 | 사업시행자 → 교육감(교육청) | 5일 이내 |
| 승인결과 공개 | 조치결과 확인 및 공개 처리 요청 | | 교육감(교육청) → 전문기관 | 10일 이내 |
| | 평가서 공개 처리 | | 전문기관 | 10일 이내 |

## 나. 주요 변경 내용

- 승인된 교육환경평가서의 의무적인 공개를 통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교육환경평가 승인사항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 교육감이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학교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표 4〉 주요 변경 내용 전·후 비교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교육환경평가서 공개 | 제19조(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25]**<br>**제19조(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br>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
| 학교장 의견 제시 | 〈신 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br>**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br>①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제16조 제7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에게 보완하여 작성·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완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야 한다.<br>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장(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2 교육환경평가 대상, 시기

### 가. 대상

#### 1)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1항제1호~제3호
- [대상] 학교용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기존 학교를 다른 위치로 이전할 경우 포함)
- [주체] 계획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
- [제외]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개가 제외되는 학교

#### 2)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제5호
- [대상]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행위를 추진하는 경우(학교설립예정지 포함)
- [주체] 정비사업 또는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
- [제외] 폐교, 이전 등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개가 제외되는 학교

〈표 5〉 교육환경평가 대상

| 구분 |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 |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
|---|---|---|
| 주체 |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br>•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자<br>• 개발사업시행자 | •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br>•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 |
| 학교급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각종학교<br>※ 작성 제외 :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개가 제외되는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각종학교<br>※ 작성 제외 : 정보공개 제외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효력 상실 시, 정비사업[1]에 한하여 대학 |
| 기타 | 기존학교 이전용지 포함 | 학교설립예정지 포함 |

**평가제외 대상 중,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개가 제외되는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 나. 시기

### 1) 기본취지

- 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등은 관련법에 의하여 통상 개발계획(또는 정비계획) 단계, 실시계획(사업시행계획) 단계로 구분되며,
- 실시계획(또는 사업시행계획) 단계는 토지이용계획이 대부분 확정되어 건축계획 등 세부 실행계획이 결정되는 시기이므로 학교용지 위치 변경 또는 학습환경 보호조치가 용이하지 않음
- 이에 따라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 적정한 학교위치 또는 학습환경 보호조치를 선 결정함에 따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분쟁 소지를 감소

**관련법에서 정하는 개발계획 또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

-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개발계획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정비계획

1) 단, 정비사업의 규모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6조제5항
- [제출 기한]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해당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 [예외]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전까지 제출 가능

### 3)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6조제5항
- [제출 기한] 해당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건축 허가 전
- [제출 안내] 정비사업 및 건축행위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 기한 안내 필요
  -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의 의미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의 의미이나, 동 단계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기한이므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안내
  - 〈대규모 건축행위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건축허가 전까지이나, 건축 관련 인·허가 단계를 고려할 때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안내

    ※ 단,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2017-117호)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시행 이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청이 취소되었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반려되는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

〈표 6〉 교육환경평가 시기

<table>
<tr><th>구분</th><th>주체</th><th colspan="2">제출기한</th></tr>
<tr><td rowspan="3">신설학교<br>교육환경평가</td><td>학교를 설립하려는 자</td><td colspan="2">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td></tr>
<tr><td>「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td><td colspan="2" rowspan="2">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br>*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td></tr>
<tr><td>「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td></tr>
<tr><td rowspan="3">기존학교<br>교육환경평가</td><td rowspan="2">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제외)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td><td>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 등인 경우</td><td>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완료 전</td></tr>
<tr><td>그 외의 경우</td><td>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td></tr>
<tr><td>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td><td colspan="2">「건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td></tr>
</table>

## 3 교육환경평가 기준

### 가. 평가대상별 평가기준

[관련 조항]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표 7〉 교육환경평가 대상 및 기준

| 평가 대상 | | 평가 기준 |
|---|---|---|
| 1. 위치 | 가. 일반사항 | 1) 교지가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될 것 |
| | | 2) 교지와 도서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인접될 것 |
| | | 3)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는 해당 교육청의 중·장기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에 부합할 것 |
| | 나. 통학범위 | 1)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
| | | 2)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적정한 거리일 것 |
| | 다. 통학안전 | 1) 교지가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과 인접되지 않을 것 |
| | | 2) 교지 인접도로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
| | | 3) 학교 통학로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게 설치될 것 |
| | | 4) 학교 통학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되고, 2미터 이상의 유효 보도폭이 확보될 것 |
| | | 5) 인근 아파트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
| | | 6)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학생의 통학에 지장 또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 |
| | 라. 통풍·조망 및 일조 | 1)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 |
| | | 2) 교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br>가)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br>나)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

| 평가 대상 | | 평가 기준 |
|---|---|---|
| 2. 크기 및 외형 | 가. 교지면적 |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
| | 나. 교지형태 |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 배치가 가능할 것 |
| 3. 지형 및 토양 환경 | 가. 지형 및 경사도 |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설치 등 공사가 용이한 부지일 것 |
| | 나. 풍수해 | 교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
| | 다.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등 | 1)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또는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br>2)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또는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br>3) 그 밖에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었던 지역이 아닐 것 |
| | 라. 토양환경 등 | 1) 교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일 것 |
| | | 2) 지표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교지에 인접한 하천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 4. 대기 환경 | 가. 대기질 | 1)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
| | |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일 것 |
| | 나. 소음 및 진동 | 교지 내 소음 · 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 · 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
| 5. 주변 유해 환경 | 가.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
| | 나. 위험시설 |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에 다음과 같은 시설이 가급적 없을 것<br>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br>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br>3)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br>4) 공항, 철도, 고가도로, 터미널,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또는 주유소<br>5) 그 밖에 학생의 건강 또는 안전 등에 위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 6. 공공 시설 | 가. 기반시설 | 학교의 상 · 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
| | 나. 그 밖의 공공시설 | 그 밖에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

비고

1. 교육부장관은 평가 기준 적용을 위한 측정·조사 방법 등 평가 기준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교지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3. 제1호라목2)가) 및 나)에 따른 기준시간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4. 교육감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일조기준이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교육규칙으로 제1호라목의 평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이 필요한 사업 등에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3), 제2호나목,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호 라목1)에 따른 평가 기준 중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평가 기준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나. 평가기준 구분

### 1) 신설학교 평가기준 및 범위

#### 평가기준

- 6개 항목, 16개 소항목, 27개 기준

#### 평가범위

- 신설학교는 사업완료 시를 기준으로 평가서 작성

### 2) 기존학교 평가기준 및 범위

#### 평가기준

- 6개 항목, 16개 소항목, 27개 기준
- 기 운영 중인 학교이므로 27개 기준 중 학생배치계획 및 교지 자체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6개 기준 제외 가능(교육감과 사전협의 수반)
- 공사 중 통학안전 기준은 5개 세부기준 적용

#### 평가범위

- 기존학교는 공사 중, 사업완료 시를 구분하여 평가서 작성

## 다. 평가기준 및 지표적용("〈표 9〉 판정방법 및 평가기준 적용 구분" 참고)

### 1) 평가기준 적용

-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교문과 아파트단지 출입구 거리 최소화, 공사로 인한 통학안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세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평가 시 반영

〈표 8〉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상세기준

| 구분 | 내용 |
|---|---|
| 교문과 아파트단지 출입구 거리 최소화 | • 학교의 학생주출입구는 집산도로 이하 주 통학로에 설치하며 차량출입구는 분리 설치<br>• 인근 아파트단지 또는 건물의 차량 진출입구와 학생 주출입구는 이격 배치 |
| 공사 중 통학안전 | • 통학로에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신호기 등을 설치할 것<br>• 통학로에는 공사 중 보행공간의 유효폭을 2m 이상 충분히 확보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것<br>• 절대보호구역(50m) 내에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br>• 등하교시간에는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에 차량진출입을 제한할 것<br>•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설치반경이 학교부지 및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를 침해하지 않을 것 |

-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에 해당하는 경우로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 학생배치계획 및 교지 자체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6개 기준 중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일조기준은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기준 적용
- 사업 규모 및 내용, 계획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없는 평가기준의 경우 평가결과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타당한 사유·근거 제시 필요
- 유치원, 대안학교, 대학(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내 운영하기 위한 용지선정에 한함)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평가항목)은 시·도교육청별 교육규칙에 따라 적용

**학교운영 형태에 따른 평가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 학교 주변에서 건설공사 시 학교운영 형태가 계속 운영, 임시 휴교, 학교 이전 또는 폐교 등의 결정에 따라 평가 가능한 기준을 적용
- (계속 운영 시) 공사 중, 사업완료 시 모두 평가기준을 적용
- (임시 휴교 시) 공사 중 평가 기준을 일부 생략 가능
  - 다만, 공사기간이 학교 비운영 기간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함
- (학교 이전 또는 폐교 시) 사업시행 기간과 이전 또는 폐교 예정 학교의 운영 기간에 중첩이 있다면 해당 학교를 평가대상에 포함
  - 다만, 이전 혹은 폐교를 근거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청과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협의문서를 근거로 제시하여야 함



### 2) 평가지표 적용

- 교육환경평가 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판단하며 평가기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상대평가, 부합평가로 구분함
  - 절대평가 : 법적 기준을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평가기준에 대해 적합, 부적합으로 평가 실시
  - 상대평가 : 정량화가 가능한 평가기준에 대해 5단계의 판정조건을 설정하여 점수평가(매우 미흡(1)-미흡(2)-보통(3)-우수(4)-매우우수(5))로 평가 실시
  - 부합평가 : 정성적 평가기준에 대해 부합, 미부합으로 평가 실시
- 절대평가, 상대평가, 부합평가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시 학교용지 위치 변경(신설학교), 사업계획 변경(기존학교)을 우선 검토하고,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타당한 근거와 대안 또는 조치계획 제시
-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 시 복수의 학교용지 위치 대안이 있을 경우 부합 여부, 점수의 비교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위치로 의사결정 하는 데에 활용 가능함

〈표 9〉 판정방법 및 평가기준 적용 구분

| 구분 | 항목 | 기준 | 판정 방법 | 적용여부 | |
|---|---|---|---|---|---|
| | | | | 신설 | 기존 |
| 위치 | 일반사항 | 공원 및 녹지축 연계성 | 상대 | ○ | V |
| | |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인접성 | 상대 | ○ | V |
| | |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 부합성 | 절대 | ○ | 교육감 협의 |
| | 통학범위 | 단위 통학권 중심배치 | 상대 | ○ | V |
| | | 초등학교 도보 30분, 중·고등학교 대중교통 30분 정도 | 상대 | ○ | V |
| | 통학안전 | 교통유발시설과 이격 | 부합 | ○ | ○ |
| | |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인접 | 부합 | ○ | ○ |
| | |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횡단 제한 | 상대 | ○ | V |
| |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연계 및 2m 이상 유효 보도폭 확보 | 상대 | ○ | V |
| | | 교문과 아파트단지 출입구 거리 최소화 | 상대 | ○ | V |
| | | 공사로 인한 통학안전 확보 | 부합 | ○ | ○ |
| | 통풍 조망 일조 | 통풍 및 조망 확보 | 상대 | ○ | V |
| | | 교지 일조시간 확보 | 절대 | ○ | ○ |
| 크기 및 외형 | 교지면적 | 법정 기준면적 이상 확보 | 절대 | ○ | ○ |
| | 교지형태 | 교지 정형화, 남향 교사배치 가능성 | 부합 | ○ | 교육감 협의 |
| 지형 및 토양 환경 | 지형 및 경사도 | 경사도 적정성, 공사시공 용이성 | 부합 | ○ | 교육감 협의 |
| | 풍수해 |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 부합 | ○ | 교육감 협의 |
| |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폐기물처리장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지역 | 부합 | ○ | 교육감 협의 |
| | 토양환경 | 토양오염 우려기준 준수 | 절대 | ○ | 교육감 협의 |
| | | 지표수 환경기준 준수 | 절대 | ○ | ○ |
| 대기 환경 | 대기질 | 대기 환경기준 준수 | 절대 | ○ | ○ |
| | |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 | 절대 | ○ | ○ |
| | 소음 및 진동 | 소음·진동 환경기준, 규제기준, 교사 내 소음기준 55dB 준수 | 절대 | ○ | ○ |
| 주변 유해 환경 |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한 | 절대 | ○ | ○ |
| | 위험시설 | 300m 이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위험시설 제한 | 부합 | ○ | ○ |
| 공공 시설 | 기반시설 |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확보 | 부합 | ○ | ○ |
| | 그 밖의 공공시설 |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 가능성 | 부합 | ○ | ○ |

※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및 기준별 적용 여부는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별표 1]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제2조 관련)을 근거로 작성함

(V) : 해당 항목에 대한 조치계획 제시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타당한 사유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조치계획을 제시하라는 검토의견으로 회신될 수 있음

## 4 교육환경평가 절차

### 1) 평가서 작성

#### 작성주체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1항
- [사업시행자] 평가대상 유형(신설/기존)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 학교용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계획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 (기존 학교를 다른 위치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또는 건축 행위를 하려는 자(학교설립예정지 포함)

#### 작성방법 및 기준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평가서 구성]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참조
  - 가)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 나) 교육환경 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자료 및 현황
  - 다)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 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은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등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예외 작성] 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의 학교용지 선정 시
  - 가)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 나)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 교육규칙에 따라 자료 일부만 제출 가능

### 평가대상 및 기준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2항, 시행령 제16조제4항, 시행규칙 제2조
- [평가 대상] 6개 항목
  -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 [평가 기준] 16개 소항목별 27개 기준
  -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와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기준 구분 적용

### 2) 교육환경평가서 보완 작성 및 제출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6조제7항
- [교육감] 평가서 검토 결과 작성방법, 작성기준 등에 따라 작성·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요청
- [보완 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회까지 보완 가능,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이상일 경우 반려 처리

**평가서 보완 회수 관련 근거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3) 교육환경평가서 다시 작성 및 제출

#### 변경대상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6조제6항
- [사업시행자] 평가서 작성·제출 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고 30일 이내 평가서 제출
- [교육감] 교육환경평가서 다시 검토
- [변경 대상] 다음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다시 작성
  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위치 변경 시
  나) 학교용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감 시
  다) 학교용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에 인접하는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 변경 시

#### 작성방법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6조제6항
- [평가서 내용] 교육환경평가서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 준용 : 교육규칙에 따라 내용 일부 생략 가능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제출**

- [관련 조항] 법 제7조제4항·제5항, 시행령 제20조
- [명령주체] 교육감
- [작성대상] 승인 내용 또는 권고사항 미이행 및 예상치 못한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 시, 평가 승인 이후 사업계획 변경 발생 시
  -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예정인 경우
- [작성방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4) 평가서 접수/등록 및 검토요청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7조제1항
- [사업시행자] 교육환경평가서를 해당 교육감에게 제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
- [교육감]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전문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검토 요청
  - 검토 요청에 앞서 교육환경평가서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서면 제출 자료와 시스템 등록 자료의 일치 여부 확인 권장
  - 유치원, 대안학교, 대학(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내 운영하기 위한 용지선정에 한함)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검토 생략 가능
- [관련 서식]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신청서(48p)

#### 5) 평가서 검토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3항,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항
- [전문기관] 검토요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의견 회신
  - 보완 검토의 경우 검토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
- [관계부서] 관계부서에서 검토 후 주관부서에 결과 회신
  - 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이 있을 경우 지역위원회 검토 및 결과 회신 절차 수행
- [검토 기준] 교육환경평가 작성 가이드라인,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가이드북 참조

#### 6) 평가서 심의

- [관련 조항] 법 제5조제1항·제8조, 시행령 제10조
- [시·도위원회]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평가서 심의
- [지역위원회] 유치원, 대안학교, 대학(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내 운영하기 위한 용지선정에 한함)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지역위원회에서 평가서 심의 가능

### 7) 승인결과/승인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승인결과 통보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5항, 시행령 제17조제3항·제4항
- [통보주체] 교육감
- [통보대상] 사업시행자, 행정기관의 장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교육환경평가서 공개(법 제6조제7항)를 위하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승인결과 통보 필요
- [통보내용] 승인여부, 승인하지 아니한 사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
- [통보시기] 평가서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관련 서식] [참고서식 1]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통보서(49p)

#### 조치결과 통보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5항
- [통보 주체] 사업시행자
- [통보 대상] 교육감
- [통보 내용]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 [통보 형태] [참고서식 2] 승인내용 반영결과 통보서(50p)

####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신청시기] 승인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 [신청주체] 사업시행자
- [신청대상] 교육감
- [신청방법]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승인결과 이의신청서(52p),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검토방법] 교육감은 시·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 검토
- [결과통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8) 승인결과 공개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7항, 시행령 제19조,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안) 제9조
- [처리기한] 승인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
- [공개내용] 승인 통보된 교육환경평가서
- [공개방법]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사업시행자] 승인 통보 내용 반영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시 “운영지침(안) [별지 4호]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서” 제출
  - [교육감]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운영지침(안) [별지 4]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서” 검토 및 “운영지침(안) [별지5]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 검토결과서”를 전문기관에 제출
  - [전문기관] 교육감이 제출한 “운영지침(안) [별지 5]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 검토결과서”에 따라 비식별 처리 후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업로드 처리

교육환경평가서 공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 안내서” 참고 권장

- [관련 서식] 운영지침(안) [별지 4], [별지 5]
  - 운영지침(안) [별지 4]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서(55p)
  - 운영지침(안) [별지 5]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 검토결과서(56p)

〈표 10〉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처리 항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구분 | 항목명 | 자료명 | 비공개 처리 근거 |
|---|---|---|---|
|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현재까지 교육환경평가서에서 확인되지 않음 | - |
| 2호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현재까지 교육환경평가서에서 확인되지 않음 | - |
| 3호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 우려가 있는 정보 | 학교시설 평면도 | 학교시설의 세부 도면자료는 교사 내 위치 및 구조 등이 확인 가능하여 범죄계획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동법 제7호에도 해당함) |
| | | 학생별 통학버스 노선/시간표 |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경우 범죄계획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동법 제8호에도 해당함) |
| | | 건축물대장 |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열람 등 공개방법, 절차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비공개함 |
| | | 등기증명서 |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라 등기증명서의 열람 등 공개방법, 절차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비공개함 |
| | | 학교 세부 자료 증빙서류 | 학교 세부자료는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계획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
| | |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 대상자의 재산권 및 경영상 정보 등에 해당함 |
| |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 대상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내용이 공개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 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현재까지 교육환경평가서에서 확인되지 않음 | - |
| 5호 |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교통영향평가 관련 자료(종합개선안도) | 다수의 이해관계인 간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동법 제7호에도 해당) |
| | | 학생배치계획 관련 자료 | 의사결정과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동법 제8호에도 해당) |
| | | 관계기관별 제시의견 원본 및 조치계획 중 의견주체 | 해당기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해 비공개함 |

| 구분 | 항목명 | 자료명 | 비공개 처리 근거 |
|---|---|---|---|
| | | 검토의견 중 금전적 보상이 명시된 자료 | 보상주체인 사업자와 보상을 받는 기관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 협약서 (사업시행자-학교 등) |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동 제7호에도 해당) |
| | | 협의 경과자료 | 협의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협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 사후평가 첨부자료 | 사후 교육환경평가에 필수적 자료라 하더라도 당초 비공개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 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업체 관련 정보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대행은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이므로 상호 공개와 별도로, 대표자 성함은 비공개함 |
| | | 참여자 인적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로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등록일자 등은 모두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음 |
| | | 차량 번호판 | 차량번호판은 교육환경평가와 무관하며, 개인정보에 해당함 |
| 7호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등록증 (작성대행업체)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가 포함된 법인의 대표자 개인 성명이 포함되어 있음 |
| | | 기술에 관한 자료 (신기술인증서 등) | 법인이 보유한 기술 정보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함 |
| | | 건축물의 종단면도 및 평면도 | 해당 도면을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경영상 또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함 |
| | | 공종계획표 | 교육환경평가 승인 이후 향후 진행될 사항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소요인력과 장비, 필요자재 등이 예상 가능하여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음 |
| | | 별도의 비공개 요청에 따른 사업추진 경과사항 | 사업의 추진과정이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비공개함 |
| 8호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통학버스 노선/시간표 |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함 |
| | | 학생배치계획 관련 자료 | |

## 5 교육환경평가 유의사항

### 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등록부터 검토의뢰 단계에서 유의사항

**해당 단계는 교육청 자체 내부 검토 기간과 같습니다.** 현재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서류(이하 평가서 등)는 교육청과 교육환경정보시스템(한국교육환경보호원 운영)을 통해 이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직접 접수한 평가서 등은 물론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서 등을 모두 확인하여 접수 완료 처리하여야 합니다.

#### 1) 법적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목적] 법적 기준 준수 여부 확인, 교육환경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 파악
- [내용]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서 검토 필요
  - 교육환경평가 대상 사업 해당 여부
  - 교육환경평가 대상 학교 해당 여부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시기 준수 여부

#### 2) 부실 작성 여부 확인

- [목적] 교육환경평가서의 부실 작성으로 인한 보완 기간의 연장 방지
- [내용]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서 검토 필요
  - 승인신청서, 교육환경평가서,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명 통일 여부
    ※ 사업명에 지번 기재 여부도 함께 확인. 이는 교육환경평가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함
  - 구역(BL) 단위별 개별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여부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의 목차 준수 여부
    ※ [관련 서식]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목차(예시) (57p)
  - 교육환경평가서 요약문에 “평가항목별 조사결과”가 작성되었는가?
    ※ [관련 서식] 평가항목별 조사결과 작성양식 예(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 3)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등록 정보 확인

- [목적] 교육청이 직접 접수한 평가서 등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서 등의 내용 불일치 방지
- [내용]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서 검토 필요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평가진행처리 단계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등록 여부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육환경평가서와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의 일치 여부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인', '대행기관', '평가유형' 정보 오류 여부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지' 정보 오류 여부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학교' 정보 오류 여부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토지이용계획도, 종합개선안도, 사업지경계를 모두 등록 여부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승인신청서, 운영지침(안)의 [별지 1], [별지 2]를 모두 등록 여부

※ [관련 서식] 운영지침(안) [별지 1]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53p),
[별지 2] 교육환경평가 정보공개 동의서(54p)

교육환경평가 접수 완료 단계에서 확인 및 검토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육환경평가 검토 가이드북" 참고 권장

〈표 11〉 교육환경평가서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에 대한 검토 체크리스트(예시)

| 구분 | Check List(점검사항) / 제도운영 및 작성일반 | 만족여부 | |
|---|---|---|---|
| | | 예 | 아니오 |
| 법적 근거 | · 교육환경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가? (사업 유형 확인) | | |
| | · 교육환경평가 대상 학교에 해당하는가? (학교 유형 및 이격 거리 확인) | | |
| |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시기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제도운영 (시스템 포함) | · 승인신청서, 교육환경평가서,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검토 요청 공문에 등록된 사업명이 통일되어 있는가? | | |
| | · 사업명에 대표지번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가? | | |
| | · 구역(BL) 단위별로 각각의 교육환경평가서가 작성되었는가? | | |
| | ·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의 목차에 따라 작성되었는가? | | |
| | · 교육환경평가서에 조사결과 요약표가 제시되어 있는가? | | |
| | · 교육환경평가서 항목별 기재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평가진행처리 단계에 맞추어 교육환경평가서가 업로드되었는가? | | |
| |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교육환경평가서가 오등록된 경우가 없는가? | | |
| |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인', '대행기관', '평가유형' 정보에 오류가 없는가? | | |
| |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지' 정보에 오류가 없는가? | | |
| |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학교' 정보에 오류가 없는가? | | |
| |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토지이용계획도, 종합개선안도, 사업지경계를 모두 등록하였는가? | | |
| |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승인신청서, 별지 1호, 별지 2호를 모두 등록하였는가? | | |
| 보완/ 다시 작성, 사후평가 | · (보완 작성인 경우) 관계기관별 검토의견과 그에 대한 보완내용, 반영여부 등이 작성되어 있는가? | | |
| | · (다시 작성 또는 사후평가인 경우) 사업계획 변경 전·후의 변경내용, 종합평가, 조치계획 등이 비교 작성되어 있는가? | | |
| | · (사후평가인 경우) 심의결과가 교육환경평가서에 첨부되어 있는가? | | |

## 나. 교육환경평가 검토의견 회신 단계에서 유의사항

### 1) 보완 작성된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시 유의사항

- [목적] 보완 요구 내용의 포함 여부 확인
- [내용]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서 검토 필요
  - 관계기관별 검토의견과 그에 대한 보완내용, 반영여부 등 작성 여부

**보완기간 및 횟수 관리 필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회까지 보완 가능
-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이상일 경우 반려 처리

### 2) 다시 작성된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시 유의사항

- [목적] 다시 작성 요구 내용의 포함 여부 확인
- [내용]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서 검토 필요
  - 사업계획 또는 설립계획 등의 변경내용과 사유 제시 여부
  - 사업계획 변경 전·후의 교육환경평가 결과 제시 여부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평가결과가 악화되거나 조치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평가기준을 주요 검토항목으로 설정 및 조치계획 제시 여부

## 다. 교육환경평가서 심의부터 승인사항 공개요청 단계에서 유의사항

- 교육환경평가 처리 기간의 명확화를 위하여 승인·불승인·조건부 승인 외의 표현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하는 것 지양

  ※ 승인·불승인·조건부 승인 외의 표현 예) 보류, 보완, 재검토 등

## 라. 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의 학교용지 선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시 유의사항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4항·제6항, 시행령 제16조제2항
- [제출] 사업시행자는 교육감에게 평가서 제출
  - [작성내용]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교육규칙에 따라 자료 일부만 제출 가능)
- [검토] 전문기관 검토 생략 가능
- [심의] 교육장 소속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평가서 심의
- [결과통보] 교육감이 사업시행자에게 승인결과 통보
- [이의신청] 사업시행자가 교육감에게 이의신청,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

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의 학교용지 선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등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1호~제5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 필요

# 6 관련 서식 등

## 가.「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 교육환경평가서 신청서

**신청인 정보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인 정보 작성 시 개인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명, 사업자번호 기재 권장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45일 |
|---|---|---|---|---|---|
|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사업 현황 | 사업명 | | | | |
| | 위치 | | | | |
| | 면적 | | | | |

| 학교 현황 | 구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고등학교 | 기타학교 | 대학교 | 계 |
|---|---|---|---|---|---|---|---|
| | 학교수 | | | | | | |
| | 면적 | | | |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교육청 교육감** 귀하

| 신고인 제출서류 | 1. 교육환경평가서 | 수수료 없 음 |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검토 (전문기관) | → | 시·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 심의 | → | 결재 | → | 결과서 통보 |
|---|---|---|---|---|---|---|---|---|---|
| 신청자 | 교육청 | | 교육청 | | 교육청 | | 교육청 | | 신청자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나. [참고서식 1]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통보서

###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신설/기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나. 위　　치 :

다. 사업규모 :

라. 사업기간 :

마. 사 업 자 :

바. 평가대상 : 총 (　　)교

| 구분 | 유 | 초 | 중 | 고 | 대학 | 기타 | 계 |
|---|---|---|---|---|---|---|---|
| 학교수 | | | | | | | |

**2. 심의대상**

가. 심의일시 :

나. 학 교 명 :

다. 학교위치 :

라. 부지면적 :

**3. 심의내용**

가. 심의결과 : 승인(　), 불승인(　)

| 불승인 시 사유 | |
|---|---|

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

| 항목 및 기준 | 권고사항 | 비고 |
|---|---|---|
| | | |
| | | |

## 다. [참고서식 2] 승인내용 등 반영결과 통보서

### 승인내용 등 반영결과 통보서

**1. 사업현황**

| | |
|---|---|
| 사업명 | |
| 사업자 | |
| 사업기간 | |
| 사업승인관청 | |
| 사업승인일(년/월/일) | |

**2. 학교현황**

| | | | |
|---|---|---|---|
| 학교명 | | 부지면적 | |
| 학교위치 | | 승인결과 통보일<br>(년/월/일) | |

**3. 반영결과**

| 항목 및 기준 | 승인내용 또는<br>권고사항 | 조치결과 | 관련서류 | 비고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내용 또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

| 작성요령 |
|---|
| 1. 승인내용란, 조치결과란에는 시행방법, 시행시기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br>2. 관련서류란은 항목 및 기준별로 설계보고서·설계도면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조치결과가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반영할 사항이 아닌 내용인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명을 적으며,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합니다.<br>3. 비고란에는 승인내용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 라. [참고서식 3]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 착공·준공·공사중지 통보서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 [ ]착공 [ ]준공 [ ]공사중지 통보서**

### 1. 사업현황

| | | | |
|---|---|---|---|
| 사업명 | | | |
| 사업자 | | | |
| 사업기간 | | | |
| 사업승인관청 | | | |
| 사업승인일(년/월/일) | | | |
| 승인결과 통보일(년/월/일) | | 평가학교수 | |

### 2. 통보내용

| 구분 | 내용 |
|---|---|
| 착공일 | |
| 준공일 | |
| 공사중지 | 중지일 |
| | 공사재개일 |
| | 사유 |
| | 공사중지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방안 |

상기와 같이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 · 공사중지)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

## 마.「교육환경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승인결과 이의신청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승인결과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

| | | |
|---|---|---|
| 신청인 | 성명(상호)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사업 등의 내용 | |
| | 관련 학교 | 승인결과 통보를 받은 날짜 |

| | |
|---|---|
| 이의신청 내용 및 이의신청 사유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심의 | → | 심의결과 통보 |
|---|---|---|---|---|---|---|---|---|
|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 |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 |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 |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 |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바. 운영지침(안) [별지 1]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환경평가서 내의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대국민 공개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교육청에서는 평가서의 공개절차 상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소속, 자격번호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작성·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 내 내용 확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청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교육청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연번 | 성명 | 개인정보 이용동의<br>(해당란에 체크) | 개인정보 제공동의<br>(해당란에 체크) | 서명 |
|---|---|---|---|---|
| | | □ 동의 □ 비동의 | □ 동의 □ 비동의 | |
| | | □ 동의 □ 비동의 | □ 동의 □ 비동의 | |

20○○년 ○○월 ○○일

**○○○○교육감 귀중**

## 사. 운영지침(안) [별지 2] 교육환경평가 정보공개 동의서

### 교육환경평가 정보공개 동의서

<table>
<tr><td rowspan="3">자료제출자</td><td>성명:</td><td>생년월일:</td></tr>
<tr><td colspan="2">주소:</td></tr>
<tr><td colspan="2">연락처:</td></tr>
<tr><td colspan="3">자료목록</td></tr>
<tr><td>연번</td><td>자료명칭</td><td>수량</td><td>제작자 성명</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상기 본인(본 단체)은 위 제출한 자료(교육환경평가서)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관련하여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br><br>☐ 동의(필수)<br>※「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br><br>☐ 동의(필수)<br>※ 상기 제출 자료(동영상, 이미지 등)가 학술연구와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전시, 공개, 복제, 촬영, 2차 저작물 작성 등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br><br>년 월 일<br><br>자료제공자: (서명 또는 인)</td></tr>
<tr><td>자료제공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 상의 제한사항</td><td colspan="2"></td></tr>
</table>

## 아. 운영지침(안) [별지 4]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서

###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서

| | |
|---|---|
| ① 사업명 | |
| ② 비공개 요청 대상 | □ 교육환경평가서<br>□ 사후교육환경평가서 |
| ③ 비공개 요청 사유 | |
| ④ 비공개 요청 범위 | □ 전부 비공개<br>□ 일부 비공개 (비공개 대상범위: ) |
| ⑤ 추후 공개 가능 시기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비공개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교육감 귀하**

**※ 작성방법**

① "사업명"란은 교육환경평가서 등에 제시한 사업명을 기재한다.

② "비공개 요청대상"란은 비공개하고자 하는 교육환경평가서 등에 "∨"표를 한다.

③ "비공개 요청사유"에는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및 교육환경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를 요청하여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 요청범위"에는 해당 부분에 "∨"표를 하고, 일부 비공개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⑤ "추후 공개 가능시기"란에는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준공 후" 또는 "공개 불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⑥ "신청인"은 사업시행자 명의로 신청한다.

## 자. 운영지침(안) [별지 5호]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 검토결과서

###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 검토결과서

<table>
<tr><td>① 사업명</td><td colspan="2"></td></tr>
<tr><td>② 비공개 요청 범위</td><td colspan="2">☐ 일부 비공개 (비공개 대상범위: )<br>☐ 전부 비공개</td></tr>
<tr><td rowspan="9">③ 비공개 대상 유형<br>(중복 선택 가능)</td><td rowspan="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td><td>☐ 1호 법령 등에 따른 비공개 규정 정보</td></tr>
<tr><td>☐ 2호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td></tr>
<tr><td>☐ 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td></tr>
<tr><td>☐ 4호 재판, 범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법 집행의 오류 초래 정보</td></tr>
<tr><td>☐ 5호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인사,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 과정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td></tr>
<tr><td>☐ 6호 특정사항을 제외한「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td></tr>
<tr><td>☐ 7호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td></tr>
<tr><td>☐ 8호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td></tr>
<tr><td colspan="2">☐ 기타(④요청사유에 관련법률 조항 또는 객관적 근거사유 제시)</td></tr>
<tr><td>④ 비공개 요청사유</td><td colspan="2"></td></tr>
<tr><td>⑤ 검토 결과</td><td colspan="2"></td></tr>
</table>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검토 결과입니다.

년 월 일

**※ 작성방법**

① “사업명”란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신청서”등에 제시한 사업명을 기재한다.

② “공개 요청 범위”에는 해당 부분에 “∨”표를 하고, 일부 비공개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비공개 대상 유형”에는 비공개 요청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부분에 “∨”표를 한다.

④ “비공개 요청사유”에는 비공개 요청의 대상이 되는 평가서 상의 자료 또는 항목에 대하여 대상별 사유를 구체적으로 각각 기재한다.

## 차.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목차 예

〈표 12〉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목차(예시)

| 구분 | 설명 |
|---|---|
| Ⅰ. 요약문 | • 사업내용, 종합평가(평가기준별 조사 결과, 판정 결과), 조치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요약하여 작성함<br>• 사업내용, 평가기준별 조사결과, 평가기준별 판정 결과는 제시한 양식에 따라 작성 권장함 |
| Ⅱ. 사업개요 | • 사업의 배경 · 목적, 사업추진경과 · 계획, 사업내용, 실시근거를 요약하여 작성함 |
| Ⅲ. 평가대상, 평가기준 설정 | • 평가대상 학교에 대한 정보, 평가기준 설정의 근거(관련 조항 등)를 작성함 |
| Ⅳ. 평가기준별 영향 예측 및 조치계획 | • 평가기준별 조사항목, 범위, 방법, 결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평가 근거 및 조치계획을 작성함 |
| Ⅴ. 종합평가 | • 종합평가(평가기준별 판정 결과), 그에 따른 조치계획(저감방안 등) 및 실행계획을 작성함<br>• 종합평가(평가기준별 판정 결과)는 제시한 양식에 따라 작성 권장함<br>• 평가대상 학교가 여러 개인 경우 학교별로 결과를 제시해야 함<br>※ 임의로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합산한 결과를 제시하지 말 것을 권장함 |
| Ⅵ. 부록 | • 교육환경평가 대행자 현황, 각종 협약서, 측정 기록부, 각종 데이터 원본값 등을 작성함 |

평가항목별 조사결과 작성양식 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권장

# Ⅳ

# 사후관리

1. 주요 내용
2. 사후관리 절차
3. 관련 서식 등

# Ⅳ. 사후관리

## 1 주요 내용

### 가. 「교육환경법」 제정(2016.2.3. 제정, 2017.2.4. 시행)

- 기존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평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임
- 이에 「교육환경법」을 제정 및 시행하여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 나. 사업시행자 이행 의무 부여 및 교육감 조사·확인 절차 마련

- 교육환경평가는 개발계획 등 수립단계에서 시행되므로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에 승인(권고)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실제 공사 또는 학교 운영 시에 조치계획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따라서, 「교육환경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승인(권고)내용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감은 이행 여부의 조사·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가 마련되었음

### 다. 사후교육환경평가(법 제7조)

- 「교육환경법」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권고)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환경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승인(권고)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해야 함
- 「교육환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에 따라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제출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에 따른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을 명해야 함

## 2 사후관리 절차

본 사후관리 절차의 내용은 2023년 08월에 배포된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 매뉴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매뉴얼 참고 권장

### 가. 대상 및 시기

#### 1) 승인된 교육환경평가서 공개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7조·제19조
- [대상] 승인(권고)사항이 반영된 교육환경평가서
- [주체] 교육감(공개주체), 한국교육환경보호원(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위탁), 사업시행자
- [시기] 시·도위원회 승인 이후
- [방법] 승인된 교육환경평가서에 최종 승인(권고)내용을 반영하고, 사후관리에 활용될 이행사항 점검표가 포함된 최종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

#### 2) 이행사항 조사·확인

- [관련 조항] 법 제7조제2항·제3항
- [대상]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권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 [주체] 교육감
- [시기] 사업계획 등 확정 시, 착공 이후 공사 중, 학교 운영 시 시행
- [방법] 사업시행자에게 승인(권고)내용 등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고, 관할 교육청 담당자의 사업장 출입 조사(필요 시)
  - 담당자는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 3)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 [관련 조항] 법 제7조제4항·제5항, 시행령 제20조
- [대상] 이행사항 점검 결과, 승인(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승인 당시 예상치 못한 교육환경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 [작성명령] 교육감
- [작성주체] 사업시행자

## 나. 절차

> 본 사후관리 절차에서 보고서 제출 또는 회신기간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며 사업 공종의 변화를 고려하여 일정기간(분기 또는 반기 등)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예상되어 제시되었음을 참고

### 1) 사전확인

① 승인(권고)내용 반영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요청 : 교육감 → 사업시행자

- [교육감] 사업시행자에게 심의 승인(권고)내용[2]을 최종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요청
  - 해당 사업의 승인·인가·허가 등 계획 추진 시 교육환경평가서 반영 여부에 대해서 제출 요청
- [담당자] 최종 평가서에 승인(권고)내용 반영 여부 확인(분야별 교육환경평가서 참고)

2) 승인(권고)내용은 조치계획, 저감방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육환경평가서 심의를 통해 도출된 사항은 모두 평가서에 최종 반영되어야 함

② 승인(권고)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제출 : 사업시행자 → 교육감

- [사업시행자] 설립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 승인·인가·허가 진행 시 교육환경평가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
- [교육감] 설립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인가·허가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권고) 내용 반영 여부 및 적절성 확인(분야별 교육환경평가서 참고)
- [관련 서식] [참고서식 1]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내용 반영결과 통보서(69p)

> 평가서 승인결과 통보 시, 사업계획 등이 승인·인가·허가를 받은 즉시 평가서 승인내용이 반영된 인·허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
>
> 사업시행자는 관할 행정청에도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착공, 준공 등 추진상황을 관할 교육청으로 알리도록 안내

③ 사업의 공종 변화 시 교육청 통보 : 사업시행자 → 교육감

- [사업시행자] 사업 철거·착공·준공·중지·재개 시 등 교육감에게 통보
- [교육감] 사업 진행 상황을 통보받은 후 이행사항 조사·확인 준비
- [관련 서식] [참고서식 2]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 진행현황 통보서(73p)

### 2) 이행사항 조사·확인

①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요청 : 교육감 → 사업시행자

- [교육감] 교육환경평가 승인(권고)내용에 대한 관리·이행을 준수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승인내용 관리·이행현황(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권고)
- [사업시행자] 승인내용 관리·이행현황(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 [제출주기] 착공 후 정기·수시 제출
- [관련 서식] [참고서식 3] 승인내용 관리·이행현황(사후관리) 보고서(74p)

② 현장조사 계획 및 통보 : 교육감 → 사업시행자

- [교육감] 이행사항 조사·확인 7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조사 계획 통보
- [담당자]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 승인내용 반영결과 통보서를 분야(통학안전, 대기, 소음·진동)별로 참고하여, 체크리스트 작성·점검

› [조사주기] 착공 후 정기·수시 점검
› [관련 서식] [참고서식 1], [참고서식 4] 사업장 방문서(75p)

③ 승인(권고)내용 이행 여부 조사·확인 : 교육감

› [교육감] 현장조사를 근거로 승인(권고)내용 분야별 이행현황 조사·확인
› [조사주기] 착공 후 정기·수시 실시
› [관련 서식] [참고서식 1], [참고서식 3]

〈표 13〉 이행사항 조사·확인 시기 및 방법

| 구분 | 조사 시기 | 조사 내용 |
|---|---|---|
| 사업 착공 전 | 사업계획 등 승인·인가·허가 시 | 승인내용 및 권고사항 이행 적절성, 기타 교육환경 피해 조사 |
| 공사 중 | 건설공정별<br>※ 사업특성, 공사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확인주기 마련 | |
| 운영 시 | 사업 준공 시 | |
| 사업 중지 시 | 사업 중지 즉시 | 공사 중지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 조사 |

〈표 14〉 시기에 따른 주체별 사후관리 내용

| 시기 | 사업시행자 | 교육감 |
|---|---|---|
| 사업계획 등 승인·인가·허가 시 | 승인내용 반영결과 제출 | 승인내용 반영 적절성 확인 |
| 사업 착공·준공·중지 시 | 교육감에게 통보 | 이행사항 조사·확인 준비 |
| 공사 중, 운영 시 | 승인내용 이행 | 교육감 조사·확인 |
| 승인내용 또는 권고사항 미이행, 그 외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 시 |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명령 |

### 3) 이행사항 조사·확인 결과 검토 및 사후교육환경평가 심의 결정

① 현장조사 결과 검토 : 교육감

› [교육감] 이행사항 조사·확인 결과에 따른 교육환경 피해 여부 검토

**승인(권고)내용 미이행 또는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 사례**

1. 승인(권고)내용과는 다른 변경된 사항을 적용한 경우
   가. 공사차량 진·출입구의 추가 또는 위치 변경
   나. 가설방음판넬 높이 변경
   다. 가설방진막 미설치 등
2. 착공 후 설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가. 상부 및 지하 층수의 변화
   나. 세대수의 증가
   다. 사업지구 면적 변화
   라. 터파기 시 암석 발견에 따른 발파공종 추가 등
3. 예상치 못한 환경적인 피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시공 진척이 어려운 경우
   가. 발파 시 충격소음으로 인한 민원
   나. 대형차량의 통과에 의한 통학안전, 비산먼지, 소음 상의 민원 제기 등

② 사후교육환경평가 여부 결정 심의 : 교육감, 시·도(또는 지역)위원회

› [위원회] 사후교육환경평가 여부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후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명령

### 4) 사후교육환경평가 명령

①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명령 : 교육감 → 사업시행자

› [위원회] 승인 당시 예상치 못한 교육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시·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후교육환경평가 여부를 결정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 진행

› [교육감] 승인(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교육환경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명령(30일 이상 제출기한 부여(시행령 제20조제1항))

› [관련 서식] [참고서식 5]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명령서(76p)

②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검토 : 사업시행자 → 교육감

- [사업시행자]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 [교육감] 사후교육환경평가서 검토(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검토)
- [관련 서식] [참고서식 6] 사후교육환경평가 검토결과 통보서(77p)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방법**

1. 평가서 구성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준용
   가. 사업의 개요
   나. 승인내용 이행현황 및 계획
   다. 교육환경 피해 현황 및 영향 예측
   라. 교육환경 보호 조치 계획
   마. 보호조치 이행 계획
   ※ 사후교육환경평가 명령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 및 작성
2. 평가서 작성 방향
   - 사후교육환경평가 명령 내용에 따라 승인(권고)내용 미이행, 계획 변경, 현장조사 시 지적사항 등을 위주로 작성하고 해당 명령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내용에 포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③ 결과 통보 및 조치요청 : 교육감 → 사업시행자, 승인기관장

- [교육감]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교육환경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및 사업 인·허가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요청
- [담당자]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심의 결과 통보 및 조치 결과 요청

④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조치결과 제출 : 사업시행자 → 교육감

- [사업시행자]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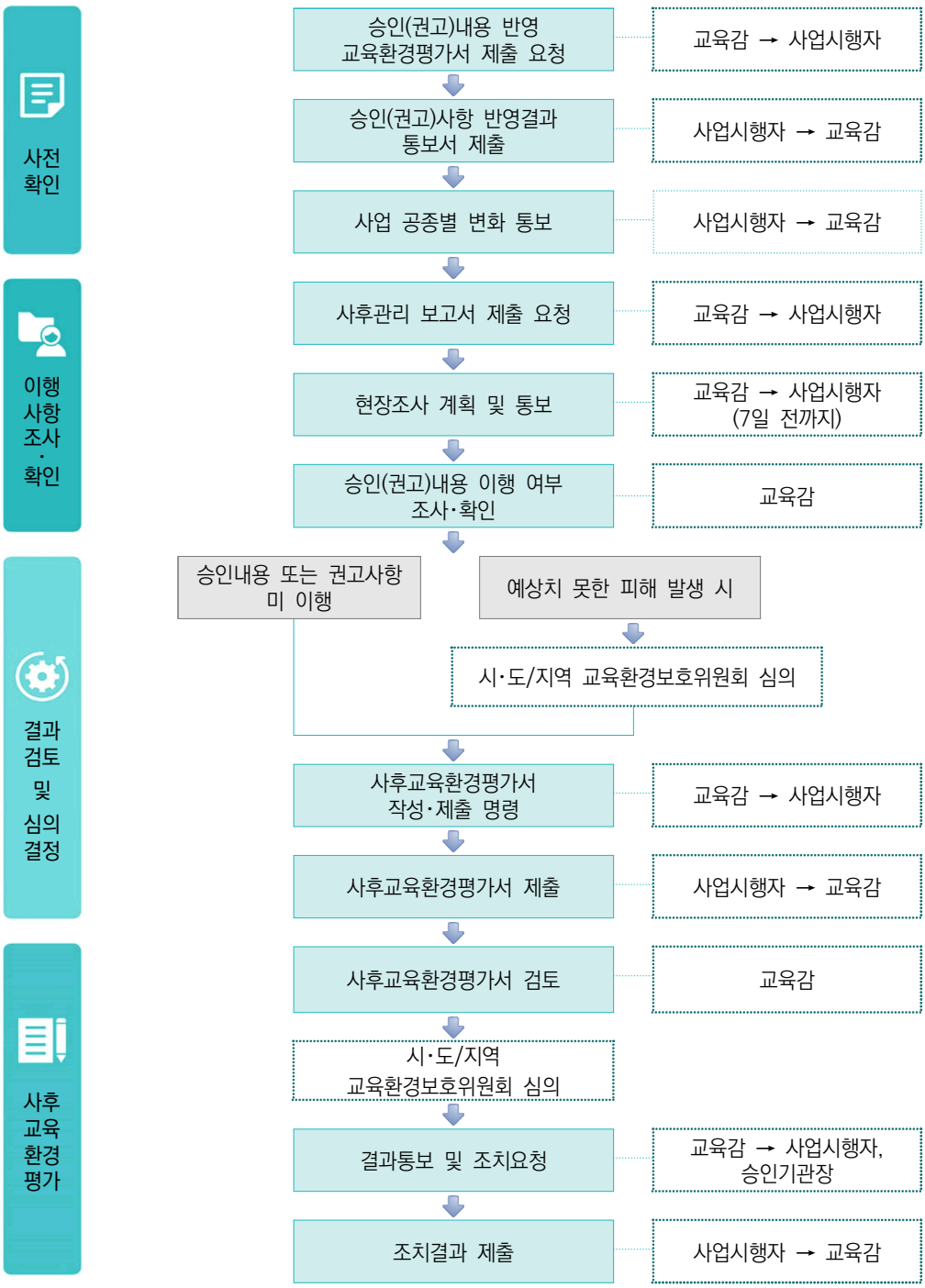
사전 확인
이행 사항 조사·확인
결과 검토 및 심의 결정
사후 교육 환경 평가
승인(권고)내용 반영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요청
교육감 → 사업시행자
승인(권고)사항 반영결과 통보서 제출
사업시행자 → 교육감
사업 공종별 변화 통보
사업시행자 → 교육감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요청
교육감 → 사업시행자
현장조사 계획 및 통보
교육감 → 사업시행자 (7일 전까지)
승인(권고)내용 이행 여부 조사·확인
교육감
승인내용 또는 권고사항 미 이행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 시
시·도/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명령
교육감 → 사업시행자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사업시행자 → 교육감
사후교육환경평가서 검토
교육감
시·도/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및 조치요청
교육감 → 사업시행자, 승인기관장
조치결과 제출
사업시행자 → 교육감

[그림 3] 사후관리 절차도

## 3 관련 서식 등

### 가. [참고서식 1]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1. 사업현황**

| | | | |
|---|---|---|---|
| 사업명 | | | |
| 사업장 위치 | | | |
| 사업시행자(전화번호) | | | |
|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 | | |
| 사업승인관청 | | 사업승인일 | |
| 사업기간 | | 시공사 | |

**2. 평가현황**

| | | | |
|---|---|---|---|
| 평가대상 교육시설 | 학교명 | 교지경계부까지의 이격거리(m) | 교사동까지의 이격거리(m) |
| | | | |
| | | | |
| | | | |
| 승인결과 통보일 | | | |

**3. 반영결과**

| 구분 | 승인내용 등 | (승인내용) 이행계획 | 승인내용 반영서류 | 비고 |
|---|---|---|---|---|
| | | | | |

상기와 같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내용 또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 **교육감 귀하**

| 작성요령 |
|---|

※ 작성방법
가. 승인내용 등 : 평가기준(통학안전, 대기, 소음·진동)별 승인내용 또는 권고사항을 기재
나. (승인내용)이행계획 : 승인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승인내용 반영서류 : (승인내용)이행계획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교육환경평가서 페이지 기입
라. 비고 : 승인내용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거나, 미반영 사유가 구체적이고 분명할 경우 미반영 사유를 기재

## 1. 반영결과(통학안전)

| 구분 | 승인내용 | 이행계획 및 내용 | 반영서류 | 이행 적정성 | | | |
|---|---|---|---|---|---|---|---|
| | | | | 이행 | 이행 예정 | 미 이행 | 해당 없음 |
| 공사 차량 진출 입구 | · 공사차량 진출입구 : 총 ( )개소<br>- (도로명) : ( )개소, (도로명) : ( )개소 | 이행계획 작성 (현장사진 등 첨부) | | | | | |
| | · 공사차량 이동경로<br>- (도로명)~(도로명)~(도로명) | 공사 진행에 따른 이행내용 기록·관리 | | | | | |
| | · 등하교 시간대 공사차량 운행 제한<br>(등교 : 00:00~00:00)<br>(하교 : 00:00~00:00) | | | | | | |
| 안전 요원 배치 | · 안전요원 총 ( )인 배치 | | | | | | |
| | · 공사차량 진출입구 ( )인<br>- 상시( )인, 등하교시간( )인 | | | | | | |
| | · 통학로(교차부, 교문 등) ( )인<br>- 상시( )인, 등하교시간( )인 | | | | | | |
| 안전 시설 설치 | · 공사안내표지판 ( )개소 설치<br>- 위치 : (도로명 등) | | | | | | |
| | · 사업부지경계 가설휀스 연장 ( )m 설치 | | | | | | |
| | · 공사현장과 통학로 상충구간 안전휀스 설치<br>- 위치 : (도로명 등), 연장( )m | | | | | | |
| | · 공사안전경고등, 반사시설물, 차량경보, CCTV, 라바콘, PE드럼, 조명 등 설치 | | | | | | |
| 통학 연속 | · 통학로 보행공간 2m 확보 | | | | | | |
| | · 통학로 단절, 폐쇄에 따른 임시보도·대체도로 등 확보 | | | | | | |
| | · 통학로 적치물 없이 별도 하역공간 확보 | | | | | | |
| | · 통학로와 분리된 차량 대기공간, 주차공간 확보 | | | | | | |
| 낙하 안전 | · 타워크레인 ( )기 운영 | | | | | | |
| | · 사업구역 내 운행반경 제한 | | | | | | |
| | · 통학로 지붕형 보행통로 설치<br>- 위치 : (도로명 등), 연장( )m | | | | | | |
| | · 기타 낙하물 안전대책<br>- 종류 : ( ) | | | | | | |
| 기타 사항 | · 통학버스 등 추가 안전대책 적용 | | | | | | |
| | · 착공 전 공사일정, 건설장비 이동계획 제출<br>(사업시행자 ⇒ 해당학교, 교육청) | | | | | | |

## 2. 반영결과(대기질)

| 구분 | 승인내용 | | 이행계획 및 내용 | 반영서류 | 이행 적정성 | | | |
|---|---|---|---|---|---|---|---|---|
| | | | | | 이행 | 이행 예정 | 미 이행 | 해당 없음 |
| 수송 | · 세륜·세차시설 설치 (공사장 출입구 : (  )개소) | | 이행내용 작성 (현장사진 등 첨부) | | | | | |
| | · 공사장 출입구 환경전담요원 (  )명 고정배치 | | 공사 진행에 따른 이행내용 기록·관리 | | | | | |
| | · 공사장 내 차량통행로 우선포장 | | | | | | | |
| 야적·살수 | · 토사 적치물 상단 방진덮개 설치 | | | | | | | |
| | · 주기적 살수 (  )회/일, 건기 시 (  )회/일 | | | | | | | |
| | · 고정식/이동식 물뿌림시설 설치 | | | | | | | |
| | · 사업구역 내 학교 인접구간 상시관리 방안 적용(살수횟수 증가, 공사강도 조절, 공사시간 조정 등) | | | | | | | |
| 상·하차 | · 차량 상부 방진덮개 설치 | | | | | | | |
| 방진막 | · 방진막 설치(H = (  )m)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설치) | | | | | | | |
| 모니터링 | · 대기모니터링 측정기 설치 | 사업지구 경계부 : (  )개소 | | | | | | |
| | | 대상학교 : (  )개소 | | | | | | |
| | · 실시결과 (해당학교 및 관할교육청) | 기록·보관 여부 | | | | | | |
| | | 주기적 제출 여부 | | | | | | |
| 석면해체 | · 철거 전 건축물 석면조사 여부 | | | | | | | |
| | · 철거 후 공기 중 비산 석면 농도 측정 여부 | | | | | | | |
| | · 석면 해체 관련 보고서 일체 제출 여부(사업시행자 ⇒ 해당학교, 교육청) | | | | | | | |
| 기타사항 | · 고층부 건축공 시 저감방안 | | | | | | | |
| | · 질소산화물 저감방안 | | | | | | | |

### 3. 반영결과(소음·진동)

| 구분 | 승인내용 | 이행계획 및 내용 | 반영서류 | 이행 적정성 | | | |
|---|---|---|---|---|---|---|---|
| | | | | 이행 | 이행 예정 | 미 이행 | 해당 없음 |
| 가설 방음 판넬 | · 대상학교 맞은편 경계부 설치 (H = ( )m, L = ( )m) | 이행내용 작성 (현장사진 등 첨부) | | | | | |
| | · 그 외 사업장 경계부지 설치 (H = ( )m, L = ( )m) | 공사 진행에 따른 이행내용 기록·관리 | | | | | |
| | · 구조안전성 검토결과 제출 (사업시행자 ⇒ 해당학교, 교육청) | | | | | | |
| 추가 저감 대책 | ·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설치 (H = ( )m, L = ( )m) | | | | | | |
| | · 엔진룸 방음덮개 설치 | | | | | | |
| | · 이동식 대형 방음천막 설치 | | | | | | |
| | · 풍선형 방음벽 설치 | | | | | | |
| 상층 공사 저감 대책 | · 갱폼소음판넬(시스템) 설치 | | | | | | |
| | · 흡방음 커튼·4중커튼 설치 | | | | | | |
| | · Drop-Down/판도라 공법 적용 | | | | | | |
| | · 층별 소음저감용 매트 설치 | | | | | | |
| 모니 터링 | · 대상 학교 옥상 상단 마이크로폰 ( )개소 설치 | | | | | | |
| | · 소음도 표시 전광판 설치 | | | | | | |
| | · 사업장 가설방음판넬 상단 ( )개소 설치 | | | | | | |
| | · 모니터링 실시결과 주기적 제출 (사업시행자 ⇒ 해당학교, 교육청) | | | | | | |
| 진동 모니 터링 | · 진동가속도계 ( )개소 설치 | | | | | | |
| | · 건물경사계/균열측정계 설치 | | | | | | |
| | · 모니터링 실시결과 주기적 제출 (사업시행자 ⇒ 해당학교, 교육청) | | | | | | |
| 발파 소음 진동 대책 | · 교육환경평가서 발파진동 목표기준<br>- ( )Kine, ( )dB(A)<br>- 지발당 장약량 ( )kg | | | | | | |
| | · 발파 시 소음방지매트 설치 | | | | | | |
| | · 시험발파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시행자 ⇒ 해당학교, 교육청) | | | | | | |
| | · 발파공사 시 해당학교에 통보 및 발파 일정협의 (사업시행자 ⇒ 해당학교) | | | | | | |
| 기타 사항 | · 흙막이공법 적용(H-Pile토류벽/ C.I.P/Slurry Wall공법 등) | | | | | | |
| | · 공기주입형 방음벽 연속설치 (해당 학교 완전 차폐) | | | | | | |
| | · 가설방음판넬 상단 간섭장치 부착 (Wave Edge 원리) | | | | | | |

## 나. [참고서식 2]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 진행현황 통보서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 [ ]기존건축물철거·부지정지공 [ ]착공 [ ]준공 [ ]공사중지 [ ]공사재개 **통보서**

### 1. 사업현황

| | | | |
|---|---|---|---|
| 사업명 | | | |
| 사업시행자 | | | |
| 사업승인관청 | | 사업승인일 | |
| 사업기간 | | 시공사 | |

### 2. 평가현황

| | | | |
|---|---|---|---|
| 평가대상 교육시설 | 학교명 | 교지경계부까지의 이격거리(m) | 교사동까지의 이격거리(m) |
| | | | |
| | | | |
| | | | |
| 승인결과 통보일 | | | |

### 3. 통보내용

| 구분 | 내용 |
|---|---|
| 철 거 일 | |
| 착 공 일 | |
| 준공일(예정) | |
| 공사중지 · 공사재개 | 중지일 |
| | 공사재개일 |
| | 사유 |
| | 공사중지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방안 |

상기와 같이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의 (철거·착공·준공·공사중지·공사재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 교육감 귀하**

## 다. [참고서식 3] 승인내용 관리·이행현황(사후관리) 보고서

### 승인내용 관리·이행현황(사후관리) 보고서

작성일 :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 직급 : 성명 :

**1. 사업현황**

| | | | |
|---|---|---|---|
| 사 업 명 | 00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
| 사업시행자 | 000산업단지개발(주)(HP : 000-000-0000) | | |
| 공사책임자 | 000건설(주) 현장소장 0 00 (HP : 000-000-0000) | | |
| 사업승인관청 | 00시청(00과) | 사업승인일 | 2020. 00.. 00 |
| 사업기간 | 202.00.00~2024.00.00. | 시공사 | 0000건설(주) |

**2. 평가현황**

| | 학교명 | 교지경계부까지의 이격거리(m) | 교사동까지의 이격거리(m) |
|---|---|---|---|
| 평가대상 교육시설 | 00중학교 | 00 (m) | 00 (m) |
| | 00중학교 | 00 (m) | 00 (m) |
| | 00고등학교 | 00 (m) | 00 (m) |
| 승인결과 통보일 | 2019. 00. 00. | | |

**3. 추진현황**

| | | | | | | |
|---|---|---|---|---|---|---|
| 착공(예정)일 | 2022.00.00 | | 준공(예정)일 | | 2024.00.00. | |
| 공종단계 | ①철거공사 | | ④가시설 (흙막이)공사 | | ⑦구조물공 (상부) | |
| | ②토공사 (부지정지공사) | | ⑤기초공사 (파일공사) | ○ | ⑧마감공사 (실·내외) | |
| | ③발파공사 | | ⑥지하층공사 (지하) | | ⑨포장공사 | |
| 공정률(%) | | | | | | |

**4. 반영결과**

| 구분 | 승인내용 등 | 이행내용(계획) 및 증빙자료 | 비고 |
|---|---|---|---|
| | | | |

상기와 같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내용 또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 교육감 귀하**

작성요령

※ 작성방법

가. 승인내용 등 : 평가기준별 승인내용 또는 권고사항을 기재(반영결과 통보서 내용 기재)

나. 이행내용 및 계획 : 승인내용에 대한 사업장에서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증빙자료 :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도면, 자료명 등 기재, 관련 도서 등 증빙자료 첨부

라. 본문 내용 : 보고서 본문은 반영결과 통보서를 그대로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안내

마. 비고 : 미(부분) 이행,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고 이행계획 첨부

## 라. [참고서식 4] 사업장 방문서

### 사업장 방문서

| 구분 | 내용 | | | |
|---|---|---|---|---|
| 방문일시 | | | | |
| 사업장명 | | | | |
| 소재지<br>(전화번호) | | | | |
| 방문사유 | | | | |
| 방문 공무원 |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방문서 수령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마. [참고서식 5]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명령서

###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명령서

**1. 사업현황**

| | | | |
|---|---|---|---|
| 사업명 | | | |
| 사업시행자 | | | |
| 사업승인관청 | | 사업승인일 | |
| 사업기간 | | 시공사 | |

**2. 평가현황**

| | |
|---|---|
| 평가대상 교육시설 | |
| 승인결과 통보일 | |

**3. 추진현황**

| | | | |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
| 공종단계 | | 공정률(%) | |

**4. 명령사유**

가. 승인내용 또는 권고사항 미 이행 (  )

| | |
|---|---|
| 미 이행 내역 | |

나. 승인 당시 예상치 못한 교육환경 피해 발생 (  )

| | | |
|---|---|---|
| 교육환경 피해 현황 | | |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 심의일 | |
| | 심의의견 | |

**5. 종합의견**

| |
|---|
| |

**※ 작성방법**

가. 명령사유란에는 해당하는 경우에 (V)표시를 하고 상세 내용 기재

나. 종합의견 : 사후교육환경평가가 필요한 평가항목 및 기준 제시

## 바. [참고서식 6] 사후교육환경평가서 검토결과 통보서

### 사후교육환경평가서 검토결과 통보서

**1. 사업현황**

| | | | |
|---|---|---|---|
| 사업명 | | | |
| 사업시행자 | | | |
| 사업승인관청 | | 사업승인일 | |
| 사업기간 | | 시공사 | |

**2. 작성현황**

| | | | |
|---|---|---|---|
| 평가대상 교육시설 | | | |
| 작성·제출 명령일 | | 작성·제출일 | |
| 작성·제출 명령사유 | 승인내용 또는 권고사항 미 이행(  )<br>예상치 못한 교육환경 피해 발생(  ) | | |

**3. 심의결과**(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경우 작성)

| | |
|---|---|
| 심의일 | |
| 심의의견 | |

**4. 조치 필요사항**

| 구분 | 조치 필요사항 | 비고 |
|---|---|---|
| | | |

**※ 작성방법**

가. 명령사유란에는 해당하는 경우에 (V)표시를 하고 상세 내용 기재

나. 조치 필요사항 : 평가항목 및 기준별 교육환경 보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V

# 교육환경 보호구역

1. 주요 내용
2.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관리 등
3.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방향
4. 관련 서식 등

# Ⅴ. 교육환경보호구역

## 1 주요 내용

### 가. 명칭 및 기준 변경

◎ 「교육환경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서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있음([그림 4] 참조)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는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그림 4] 학교 보호구역 범위의 개념도

-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명시하고 있음(〈표 15〉 참고)

  ※ 상대보호구역에서는 법 제9조제14호~제27호·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 나.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제외시설 규정

-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교육환경법」 제9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중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임목(林木)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파쇄·분쇄시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멸균분쇄 시설은 제외 적용
-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 「교육환경법」 제9조제14호에 따른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의 경우, 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건축물 냉·난방용 시설, 소방시설, 의료기관 내 의료용 산소공급 시설은 제외 적용
-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서 「교육환경법」 제9조제15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장소의 경우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설은 제외 적용
-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서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에 따른 숙박업 및 호텔업의 경우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 적용

### 다. 사고대비물질 관련 금지시설 규정

- 「교육환경법」 제9조제29호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 취급 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시설을 금지시설로 규정

  ※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다만,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2017년 8월 3일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 라. 거리측정 및 지적·일반 측량

◎ 「교육환경법」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에서 교육감은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일반측량의 실시 등)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및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번간의 거리측정이 가능하지만 건축물 내 실별 측량은 불가능해 좌표가 있는 전산자료 또는 연속지적도가 포함된 PDF 도면 파일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으로 제출하고 담당자에게 측정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측량업을 등록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에 제공되는 자료는 법적효력이 없음

〈표 15〉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2022.3.25. 시행〉

| No. | 행위 및 시설 | 유 | 초 | 중고 | 대학(원) | 관련법령 |
|---|---|---|---|---|---|---|
| 1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 2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 × | × | × |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 3 |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 | × | ×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 4 | 분뇨처리시설 | × | × | × | ×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 5 | 악취 배출시설 | × | × | × | ×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 6 | 소음·진동 배출시설 | × | × | × | ×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 7 | 폐기물처리시설 | ×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8 |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No. | 행위 및 시설 | 유 | 초 | 중고 | 대학(원) | 관련법령 |
|---|---|---|---|---|---|---|
| 9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 × | × |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 : 장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 가족 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 · 문중자연장지 제외) |
| 10 | 도축업 시설 | × | × | ×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 11 | 가축시장 | × | × | × | ×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 12 | 제한상영관 | × | ×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 13 | 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 | × | × |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 14 |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 | ×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약 : 고압가스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약 :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 15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 ×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 16 |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 | × | ×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 : 총포화약법)」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 17 |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 |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 :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 18 | 담배자동판매기 | ○ | × | × | ○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
| 19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20 | 게임물 시설 | × | × |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
| 21 | 무도학원 및 무도장 | ○ | ○ |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 : 체육시설법)」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 |

| No. | 행위 및 시설 | 유 | 초 | 중고 | 대학(원) | 관련법령 |
|---|---|---|---|---|---|---|
| 22 |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 × | × | × | ×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 23 | 사행행위영업 | × | × |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약 :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 24 | 노래연습장업 | ○ | × |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음악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 25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 | ×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 26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 | × | × | ×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 27 |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 × | ×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 28 | 〈삭제〉 | - | - | - | - | |
| 29 |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 | × | × | ×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 ○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2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관리 등

### 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해제·고시

#### 1) 설정·고시

학교설립예정지 통보

- [관련 조항] 법 제8조제2항
- [주체]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 또는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
- [내용]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 [관련 조항] 법 제8조제3항,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항
- [주체] 교육감
- [설정고시]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고시내용] 보호구역 설정일자, 보호구역 위치 및 면적,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

- [관련 조항] 시행령 제21조제3항, 시행규칙 제5조
-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가능, 표지판 모형 및 제작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2]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제5조 관련) 참조

## 2) 해제

- [관련 조항] 법 제8조제4항
- [해제대상] 다음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효력 상실

  가)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하게 된 때

  나)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다)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학교가 폐교 또는 이전하게 된 때 예외 사항**

- 폐교 또는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기존 용지를 활용하여 다른 학교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계획을 교육감에게 인정받은 경우로서 교육감이 정보시스템 또는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한 경우 제외

##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관리

### 1) 관리주체

- [관련 조항] 시행령 제24조
- [관리주체] 학교의 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관리 시행
  -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교육감(보호구역을 설정한 자)이 관리
- [보호구역 중복 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중복될 경우 관리주체는 하급학교이며 동일한 학교급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가 관리(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로 함)
  - 단,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중복될 경우에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설정된 학교가 관리

### 2) 관리방법

- [관련 조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시행규칙 제6조
- [관리주체] 보호구역 관리자
- [관리내용] 보호구역내 교육환경 현황 조사, 금지행위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
- [관리방법] 교육환경 현황 조사자료 작성·보관
  - 그 외 보호구역 관리 및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에 준함

## 다. 금지행위 및 시설 조치

### 1)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시

- [관련 조항] 시행규칙 제4조
- [접수] 신청인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서와 위치도, 학교와의 거리, 건축 설계도면 등의 관련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
- [검토]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심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여부 결정
- [결과통보]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관련 행정기관에 송부 가능
- [결과관리]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결과 관리대장 작성·보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 가능

- [관련 서식]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2호·3호·4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98p)
  - [별지 제3호서식]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통보서(99p)
  - [별지 제4호서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결과 관리대장(100p)

### 2)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조치

- [관련 조항] 법 제10조
- [조치요청] 교육감은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처분 및 시설물 철거명령 요청 가능
- [조치주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조치방법] 공사 중지·제한, 영업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철거명령 가능
- [결과통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조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

[그림 5]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철거명령 절차

## 3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방향

### 가. 설치

#### 1) 장소 선정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자가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표지판 설치 장소 검토
- 표지판 설치장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교문을 중심으로 학생 통행량이 많은 통학로에 설치
- 유해시설 또는 위험시설이 밀집하여 학생안전이 우려되는 장소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가능
- 표지판은 보행자 시야에 잘 들어오는 위치에 선정하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
- 표지판 설치 장소가 도로인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도로시설물에 통합 설치할 경우 도로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

#### 2) 표지 디자인 결정

가) 기본디자인

- 규격, 비례, 서체, 색상, 문구 등은 표기된 사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캐릭터 형태, 레이아웃, 색상, 비례, 문구 등을 임의 변경 불가
- **[규격]** 가로 750mm, 세로 1,125mm,
- **[서체]** a드림고딕 Regular, 서체 크기는 아래 [그림 6] 참조
- **[색상]** 글씨: 검정(C 0, M 0, Y 0, K 100)
  픽토그램(캐릭터): 검정(C 0, M 0, Y 0, K 100)
  픽토그램(금지표시): 빨강(C 15, M 100, Y 100, K 0)
  바탕: 노랑(C 0, M 0, Y 100, K 0) 및 흰색(C 0, M 0, Y 0, K 2)

[그림 6] 표지판 기본 디자인

나) 기본디자인 변형

- 기본디자인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설치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픽토그램 변경, 표지판의 축소, 교육환경보호구역도 결합, 배너디자인에서 선택·적용 가능
- [크기축소] 기본 규격이 커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유지하여 크기 축소 가능
- [픽토그램 변경] 특정 행위 및 시설 입지가 우려되는 경우 용도에 맞는 픽토그램 디자인 선택·적용
- [교육환경보호구역도 결합]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를 표시한 지도를 함께 설치 가능
  - 교육환경보호구역도에는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을 표시하고 지도안내를 위한 인터넷 주소 표기
- [배너디자인 적용] 세로형 배너형태로 기본디자인 변형 가능

[그림 7] 픽토그램 디자인

[그림 8] 교육환경보호구역도 결합 설치 형태

[그림 9] 배너디자인 형태(안)

### 3) 설치형태 및 방법 결정

- 관리자는 설치장소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형태 및 방법 검토
- 설치형태는 벽 부착형, 게시판 부착형, 지주형(단면, 양면), 사인형, 전신주 부착형, 돌출형, 배너형(가로등형, 거치형) 중에서 선택 가능
- 학교에 설치할 때에는 담장을 이용하여 벽 부착형 표지판을 설치하고 설치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게시판 부착형 표지판을 설치한다. 이 때 공간범위를 알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도를 함께 설치
  - 단, 교육환경보호구역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설치 여건에 따라 사인형, 지주형 등 다른 설치방법을 선택 가능
- 표지판을 통학로에 설치할 경우 지주형 표지판, 전신주 부착형 표지판을 설치하며 도로여건상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돌출형, 배너형 등 다른 설치방법을 선택 가능

- 표지판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가로등, 전신주 등 기존 지주시설물에 통합·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전용 지주를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

› 교육환경보호구역 특별점검, 캠페인 등의 경우 홍보 목적으로 배너형 표지 설치를 권장

[그림 10] 표지판 설치 유형

#### 4) 표지판 제작 및 설치

› 설치장소, 표지디자인, 설치방법이 결정되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표지판을 제작·설치

> 표지 디자인, 표지판 제작 및 설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 디자인 및 설치가이드라인(2016, 한국교육개발원)」을 참고

## 나. 유지관리

### 1) 청소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자는 월 1회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
- 더러움이나 먼지를 제거하고 위법한 부착물이나 낙서를 없애도록 표면을 청소

### 2) 점검

- 교육환경보호구역 정기점검 시 표지판 점검을 함께 실시
- 표지판의 노후, 파손·훼손, 탈색 등의 상황을 점검
- 설치장소와 표기정보의 적정성을 점검
- 볼트가 단단히 조여져 있는 등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
- 주변 여건이 변화하여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추가로 설치가 필요가 없는지 점검

### 3) 보수 및 교체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자는 청소 또는 점검 시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안내
- 청소 또는 점검 시 표지판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노후, 탈색 등이 된 경우 즉시 보수
- 표기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 사항에 대해 표지판을 보수
- 표시면의 퇴색이 눈에 띄거나 이전에 부분적으로 수정된 곳이 많은 경우, 새롭게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이전의 사인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시면 전체 교체
- 표지판의 파손 상황이나 정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여 전체 면적의 50%가 넘을 경우 전면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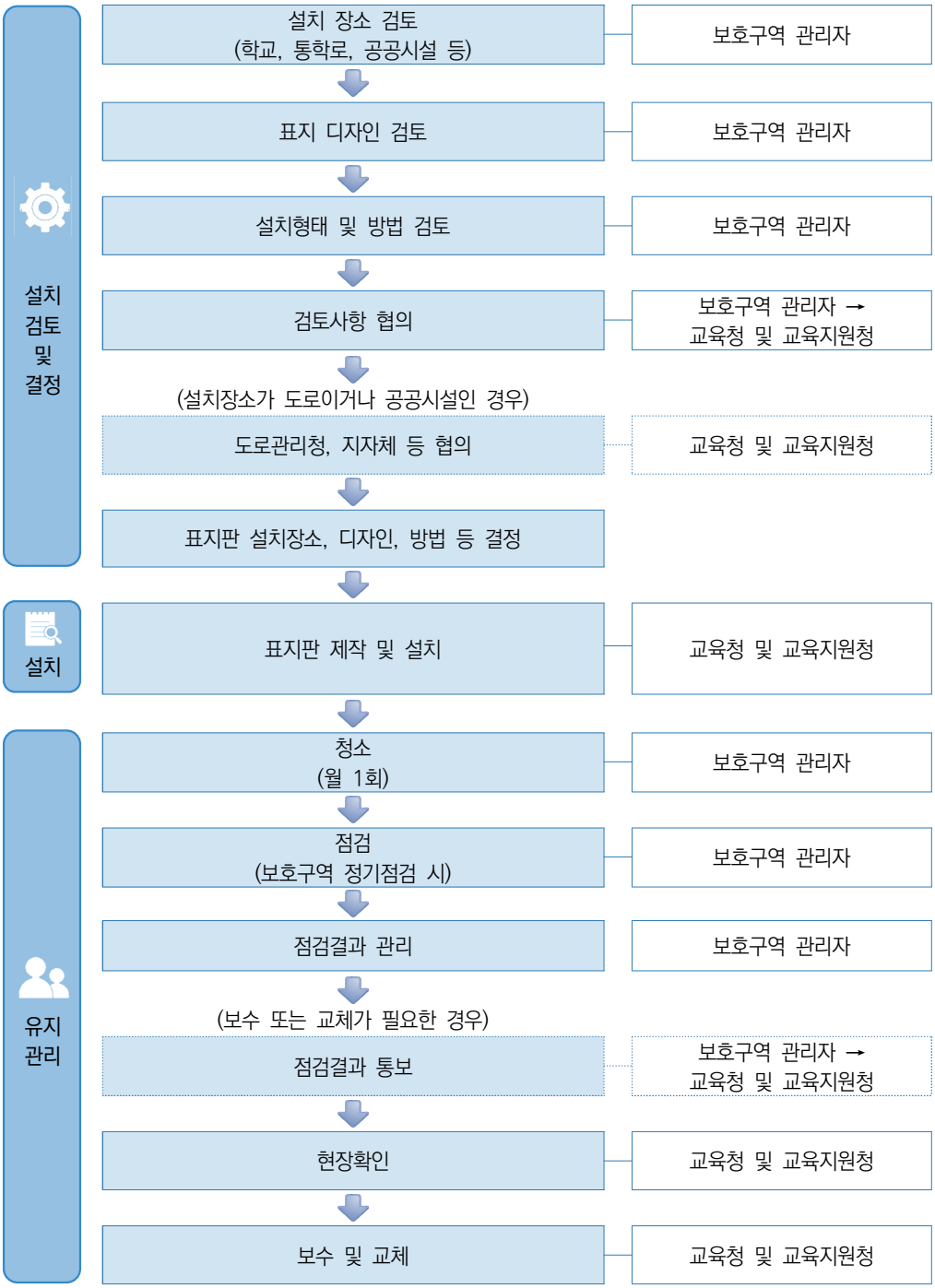


[그림 11] 표지판 설치/제작/유지관리 흐름도

## 4 관련 서식 등

### 가. 교육환경호보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적발 보고서 (예시)

**(기 관 명)**

우○○○-○○○ 주소 / 전화( ) - / 전송( ) -
(부서명) (부서장 직위 및 이름) (담당자 이름)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교육장 발 신 : 인

제 목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적발보고서

| 번호 | 행위 및 시설(상호) | 업주명 | 소 재 지 | 학교와의 거리(m) | 교육환경 저해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참고사항】**

##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예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 ① 번호 | ②행위 및 시설(상호) | 업주명 | 소 재 지 | ③위치및 면적(㎡) | ④학교와의 거리(m) | ⑤ 해제 조건 | 심의또는 적발 연월일 | ⑥적·부 | |
|---|---|---|---|---|---|---|---|---|---|
| | | | | | | | | 적법 | 불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번호 :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② 행위 및 시설(상호) : 업종 등을 기재하고, 상호는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위치 및 면적 : 건물의 경우 층수 및 면적(㎡)등을 기재한다.

④ 학교와의 거리 : 출입문과의 거리, 경계선과의 거리등 최단 지적도상의 수평거리를 기재한다.

⑤ 해제조건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⑥ 적·부: 적법업소(심의해제) 또는 불법업소 해당란에 ○표

## 다.「교육환경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40일) |
|---|---|---|

| | | |
|---|---|---|
| 신청인 | 성명(상호)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해당 행위 및 시설 | 행위 및 시설 유형 | |
| | 소재지 | |
| | 위치 ( )층 건물의 ( )층 | 면적(제곱미터) |

|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학교 및 학교와의 거리 | 학 교 명 | 출입문(미터) | 경계선(미터) |
|---|---|---|---|
| | | | |
| | | | |
| |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의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br>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1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br>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서류검토 | → 현장확인 | → 위원회 심의·의결 의뢰 | → 위원회 심의·의결 | → 결재 | → 결과서 통보 |
|---|---|---|---|---|---|---|---|
| 신청인 |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라.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통보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통보서

| | | | | |
|---|---|---|---|---|
| 신청인 | 성명(상호) |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 전화번호 | |
| 해당 행위 및 시설 | 행위 및 시설 유형 | | | |
| | 소재지 | | | |
| | 위치 ( )층 건물의 ( )층 | | 면적(제곱미터) | |
|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학교 및 학교와의 거리 | 학교명 | | | |
| | 출입문(미터) | | | |
| | 경계선(미터) | | | |
| 신청 결과 | 해당 행위 및 시설 가능[ ] | | 해당 행위 및 시설 금지[ ] | |
| 근거 규정 및 결정 이유 | | | | |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마.「교육환경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결과 관리대장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결과 관리대장

| 관리번호 | 신청내역 | | | | | | | 보호구역 관련 현황 | | | 처리결과 | | | 비고 |
|---|---|---|---|---|---|---|---|---|---|---|---|---|---|---|
| | 신청접수 연월일 | 신청인 성명 (상호) | 전화번호 | 행위 및 시설 유형 | 소재지 | 시설규모 | | 학교명 | 학교와의 거리(미터) | | 심의 결과 | 결정 결과 | 통보 연월일 | |
| | | | | | | 층별 | 면적 (제곱미터) | | 출입문 | 경계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VI

# 교육환경 정보시스템

1. 주요내용
2.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및 활용
3.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기반 업무 처리 절차

# Ⅵ. 교육환경정보시스템

## 1 주요 내용

### 가.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관련 조항] 법 제12조, 시행령 제19조
- [주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위탁]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
- [활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교육환경평가서 정보 공개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운영시스템]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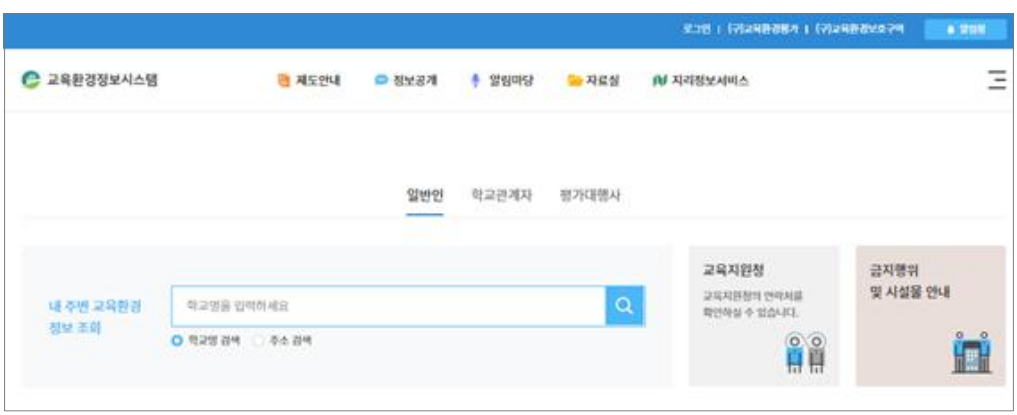


[그림 12] 교육환경정보시스템(https://eeis.schoolkeep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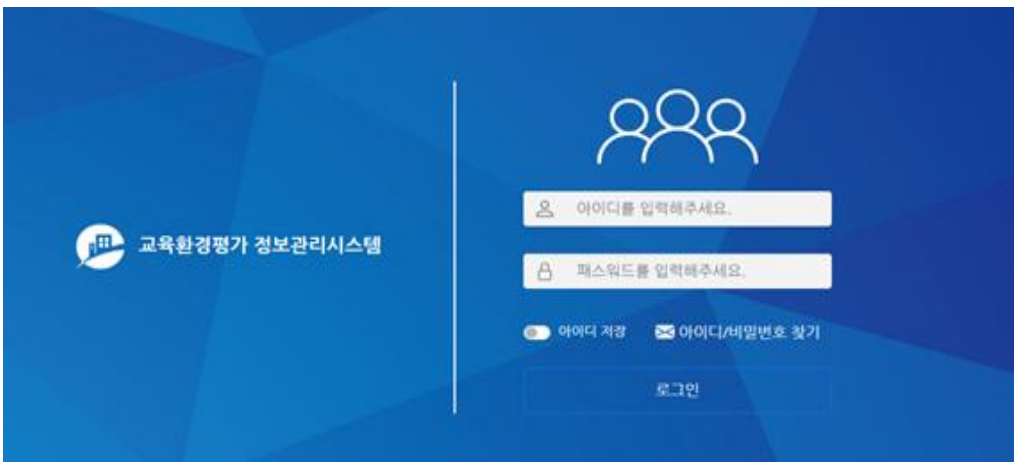


[그림 13]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https://epss.schoolkeepa.or.kr/mg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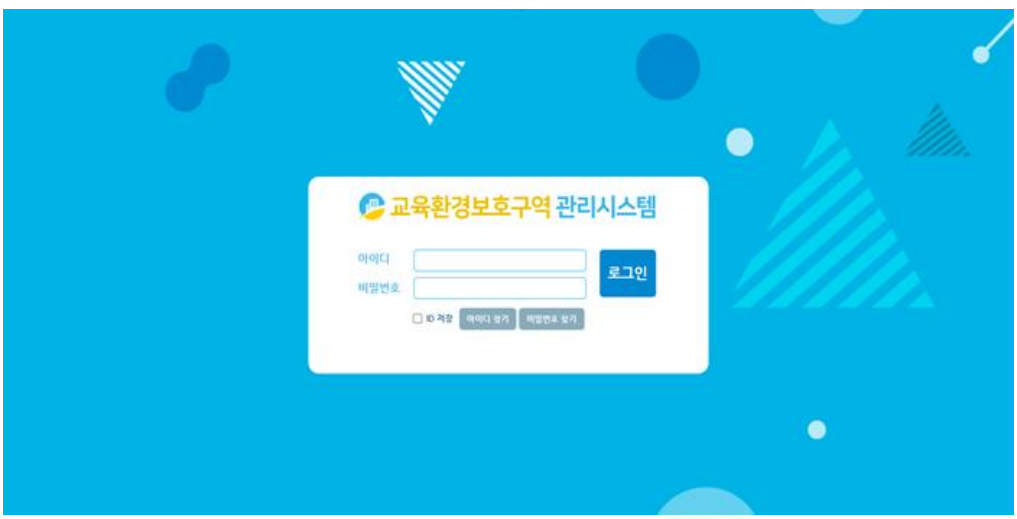


[그림 14]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시스템(https://cuzm.schoolkeepa.or.kr)

## 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안)

- [목적] 공개가 결정된 교육환경평가서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규정
- [구성] 총 19개 조항과 1개의 부칙, 별표1 ~ 3, 별지 1 ~ 8
- [관련 주체] 교육청, 운영기관, 사업시행자

〈표 16〉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 구분 | 주요 임무 |
|---|---|
| 교육청<br>업무담당자<br>(제도담당자) | 1. 교육환경평가서 등록 정보 확인 및 확인 사항 운영기관 통보<br>2. 교육환경평가서 공개범위 결정<br>3. 공개가 결정된 교육환경평가서의 운영기관 통보<br>4. 정보시스템에 「교육환경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 조사결과 등록<br>5.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운영기관 통보<br>6.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결과의 운영기관 통보<br>7.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 위반자와 그 위반내역에 대한 운영기관 통보 |
| 운영기관<br>업무담당자<br>(내부사용자) | 1. 사업시행자 등에게 교육환경평가정보 전산등록완료 확인서 발급<br>2.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공개대상 교육환경평가서를 정보시스템에 등록<br>3.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 대한 심의결과와 위반자 및 위반내역을 정보시스템에 등록<br>4.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육환경평가서 보존(백업)<br>5. 교육청, 사업시행자, 평가대행자, 일반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등급 부여 및 관리<br>6.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사업시행자 및<br>평가대행자<br>(평가관련자) | 1. 법 제6조의 교육환경평가서, 제7조의 사후교육환경평가서 등 사업정보 입력<br>2.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료 제공 |

## 2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및 활용

### 가.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전에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제도 담당자별(보건, 설립, 시설)로 할당된 계정을 통해 접속 및 활용 가능

### 2) 메인페이지 메뉴 구성

- **①정보관리시스템 메뉴**, **②평가진행현황**, **③업무도움방**, **④관련 사이트**로 구분

[그림 15]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메인페이지 화면 구성

〈표 17〉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메인페이지 메뉴 소개 ①

| 메뉴 | 설명 |
|---|---|
| ① 정보관리시스템 메뉴 | -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의 전체 메뉴 구성 확인 가능<br>- 원하는 메뉴로 이동 가능 |
| ② 평가진행현황 | - 평가진행현황을 단계별(신청중, 검토의뢰, 검토완료, 심의완료)로 확인 가능<br>-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관할 시·도에 대한 정보만 확인 가능 |
| ③ 업무도움방 | - 업무와 관련한 공지, 각종자료, 본인이 신청한 서비스요청 목록 확인 가능 |
| ④ 관련 사이트 |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에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확인 및 이동 가능 |

› ①평가진행현황〉교육환경평가에서 교육환경평가 정보 확인 및 입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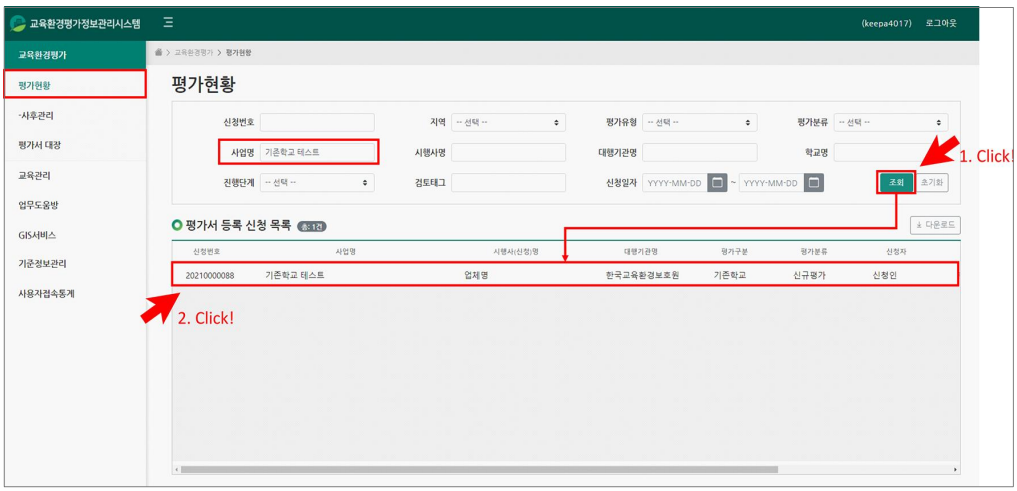


[그림 16]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평가현황 화면 구성

〈표 18〉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메인페이지 메뉴 소개 ②

| 메뉴 | 세부 구분 | | 설명 |
|---|---|---|---|
| ① 교육환경평가 | 평가현황 | | - 교육환경평가 승인 신청 접수되어 검토 및 심의 진행 중인 최초접수 또는 재접수 사업의 사업정보, 학교정보, 평가서 등 확인 가능 |
| | 사후관리 | 이행점검 | - 심의 승인된 사업의 이행점검 계획 및 결과를 입력하여 이행점검 시 활용 가능 |
| | | 사후교육환경평가 | - 사후교육환경평가 승인 신청 접수되어 검토 및 심의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의 사업정보, 학교정보, 평가서 등을 확인 가능 |
| | 평가서대장 | | - 심의 승인 이후 공개된 교육환경평가서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과거 처리내역, 이행점검 결과 등)를 확인 가능 |
| ② 업무도움방 | 공지사항 | | - 운영기관의 각종 공지사항 확인 가능 |
| | 자료실 | | - 운영기관에서 발행한 안내서, 보고서 등 확인 가능 |
| | 서비스요청 | | - 운영기관에 각종 서비스(SW 개선, DB 등) 요청 가능 |
| ③ GIS 서비스 | | | - “교육환경정보 GIS” 페이지로 이동 |

-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교육환경평가 업무 처리 및 정보 관리를 위하여 “평가 진행 처리” 단계에 대한 이해 필요
  - 평가 진행 처리 단계는 총 10개 단계로 구분
  - 평가 진행 절차에 맞추어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변경 필요

> 평가 진행 처리 단계 변경을 포함하여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의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 안내서” 참고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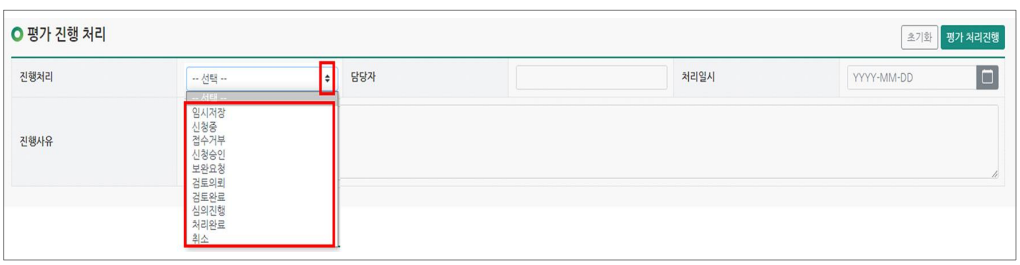


[그림 17]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평가 진행 처리 단계

〈표 19〉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평가현황〉사업상세페이지〉평가진행처리) 단계 소개

| 평가진행처리 단계 | 설명 |
|---|---|
| 신청중 | -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서와 관련 정보를 최초 등록한 때, '정보관리시스템'의 진행 단계는 '신청중'으로 나타남 |
| 신청승인 | - 등록된 평가서와 관련 정보에 대해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적용해야 함 |
| 임시저장 | - 사업시행자가 평가서와 관련 정보 등록 완료 후 불가피하게 직접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적용해야 함 |
| 접수거부 | - 승인신청 접수 절차 또는 내용에 문제가 있어 접수를 반려하려는 경우 적용해야 함 |
| 보완요청 | - 검토의견 등에 따라 평가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자가 평가서와 관련 정보를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함 |
| 검토의뢰 | - 교육(지원)청이 관계부서 및 기관으로 검토요청을 하는 시점에서 적용해야 함 |
| 검토완료 | - 교육(지원)청이 관계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회신받아 확인이 완료된 시점에서 적용해야 함 |
| 심의진행 | - 해당 사업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경우 적용해야 함 |
| 처리완료 | - 해당 사업이 심의 승인된 경우, 심의결과를 등록한 후 평가서와 관련 정보를 '평가서 대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적용해야 함<br>※ 평가서와 관련 정보가 "평가서 대장"으로 이동되어야 평가서 공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함 |
| 취소 | - 승인신청 접수가 취하된 경우 적용해야 함 |

※ 단, '비공개 요청', '비공개 완료' 등의 평가진행처리 단계 추가 계획

## 3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기반 업무 처리 절차

### 가.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기반 단계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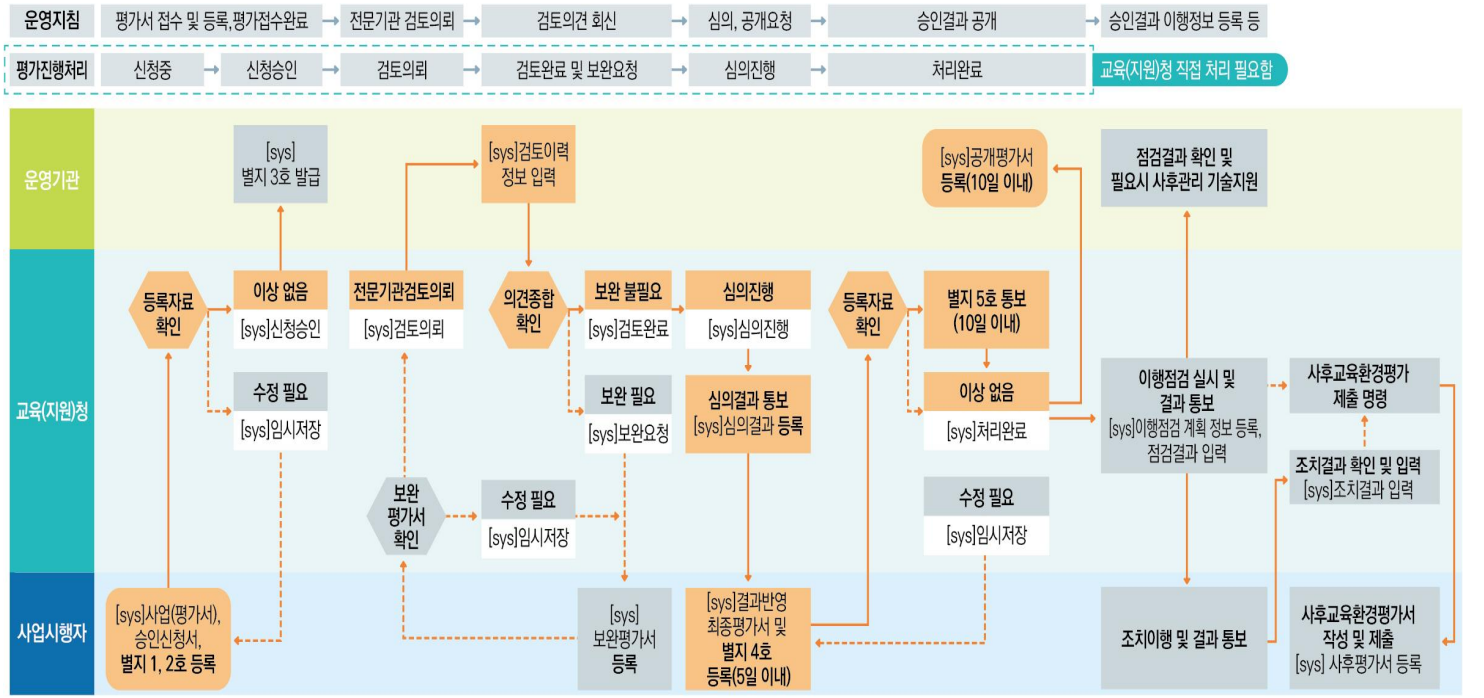


[그림 18]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기반 업무 처리 절차도

〈표 20〉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등록, 공개 절차 각 단계 설명

| 구분 | 운영지침 | 설명 |
|---|---|---|
| ① | 평가서 접수 및 등록<br>~<br>평가접수 완료 | - (평가서 접수 및 등록) 사업시행자는 교육(지원)청으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보시스템에 교육환경평가서와 함께 승인신청서, 별지 1호, 별지 2호를 즉시 등록하여야 함<br>- (평가접수 완료) 교육(지원)청은 등록된 교육환경평가정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신청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이상이 있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정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운영기관은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신청 접수 완료 통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3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 ② | 전문기관<br>검토의뢰 | - 교육(지원)청은 전문기관으로 승인신청 접수 완료된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 ③ | 검토의견 회신 | - 운영기관은 전문기관이 교육(지원)청으로 회신한 검토의견을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br>- 교육(지원)청에서는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 ④ | 심의 및 공개요청 | - (심의) 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이때, 교육(지원)청은 심의결과를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br>- (공개요청) 사업시행자는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교육환경평가서를 별지 4호와 함께 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이는 승인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 |
| ⑤ | 승인결과 공개 | - 교육(지원)청은 운영기관과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 검토 결과(별지 5호)를 통보하여야 함. 이때, 교육(지원)청은 별지 5호를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이는 별지 4호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br>- 운영기관은 별지 5호의 내용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비식별 처리하고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 나. 각 단계에 따른 교육(지원)청 역할

› 교육(지원)청의 주요 역할은 **1) 등록된 자료를 확인하는 것**, **2) 교육(지원)청이 직접 자료를 등록하는 것**, 더불어 **3) 평가진행처리를 변경시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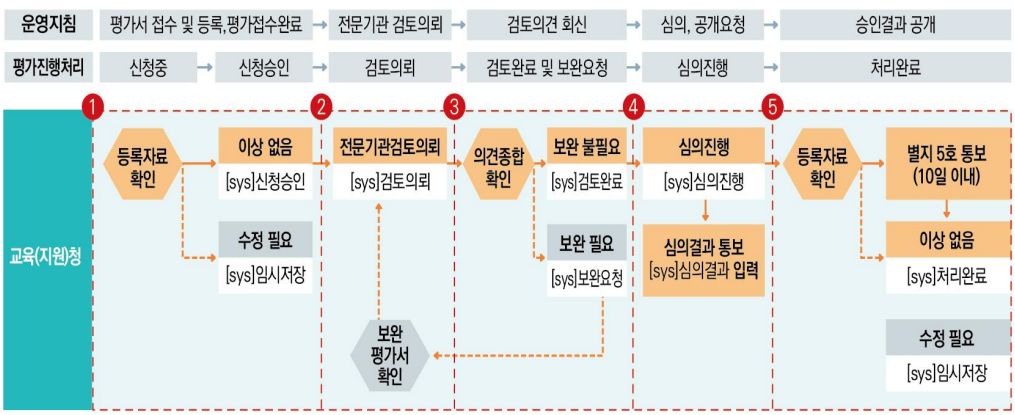


[그림 19]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기반 업무 처리 절차(교육(지원)청)

〈표 21〉 교육환경정보관리시스템 등록, 공개 절차 각 단계 설명(교육(지원)청)

| 구분 | 운영 지침 | 평가진행 처리 단계 | 설명 |
|---|---|---|---|
| ① | 평가서 접수 및 등록 ~ 평가접수 완료 | 신청중 ~ 신청승인 | - (평가 정보 확인) 평가현황에서 해당 사업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사업시행자가 등록한 사업정보, 그 평가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함<br>- (승인신청 접수) 확인 결과, 등록 정보에 이상이 없으면 평가 진행 처리에서 평가처리단계를 [신청승인] 처리하고, 이상이 있을 시 [임시저장]으로 처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등록 정보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함<br>※ 최종적으로 등록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신청 접수 완료로 인정 |
| ② | 전문기관 검토의뢰 | 검토의뢰 | - (검토의뢰) 사업상세페이지의 평가진행처리의 단계를 [검토의뢰]로 변경하고 공문을 통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 ③ | 검토의견 회신 | 검토완료 및 보완요청 | - (평가서 보완 요청) 전문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평가서의 보완 여부를 결정지어야 함<br>•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상세페이지의 평가진행처리 단계를 [보완요청]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완 평가서를 등록할 수 있게끔 조치<br>• 보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진행처리 단계를 [검토완료]로 변경하여 해당 단계 종결<br>- (검토의견 확인) 교육(지원)청은 사업상세페이지 하단의 [검토이력표] 탭을 통해 전문기관(보호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할 수 있음 |

| 구분 | 운영 지침 | 평가진행 처리 단계 | 설명 |
|---|---|---|---|
| ④ | 심의 및 공개요청 | 심의진행 | - (심의진행 현황 알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가 개최 및 진행될 때, 교육(지원)청은 해당 사업상세페이지의 평가진행처리 단계를 [심의진행]으로 변경하여 해당 사업의 진행현황을 운영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br>- (심의결과 등록 방법) 교육(지원)청은 사업상세페이지 하단의 [심의결과] 탭을 통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등록하여야 함<br>- (최종 평가서 및 별지 4호 등록 요청) 교육(지원)청은 사업시행자가 심의결과가 반영된 최종 평가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상세페이지의 평가진행처리 단계를 [보완요청]으로 변경하여야 함 |
| ⑤ | 승인결과 공개 | 처리완료 | - (등록된 최종 평가서 확인) 평가현황에서 해당 사업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그 최종 평가서 및 구비서류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함<br>- (별지 4호 확인 및 별지 5호 등록) 별지 4호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별지 4호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5호를 [구비서류] 탭에 등록하여야 함<br>- (처리완료) 위의 과정을 모두 완료하면 해당 사업의 평가진행처리 단계를 [처리완료]로 변경하여 해당 사업을 종결시켜야 함<br>※ [처리완료]로 단계 변경을 함으로써 평가서의 공개 처리가 가능해지므로 해당 과정을 필수 이행하여야 함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 안내서" 제2장-Ⅱ-2.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평가정보 등록 및 공개 절차에 각 단계에 다른 교육(지원)청 역할 수행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수록하였으니 필수적으로 참고 권장

# Ⅶ

# 기 타

1. 벌칙 및 과태료
2. 권한의 위임·위탁

# Ⅶ. 기 타

## 1 벌칙 및 과태료

- [관련 조항] 법 제16조·제17조, 시행령 제28조
- 교육환경평가 미이행, 이행사항 조사 시 거부·방해·기피, 사후교육환경평가서 미작성, 평가서 비밀누설 등의 경우까지 벌칙 범위를 확대
-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표 22〉 벌칙 및 과태료 내용

| 구분 | | 내용 |
|---|---|---|
| 벌금 또는 징역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한 자 |
| | | 교육감이 이행사항 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 |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
| | | 교육환경평가 검토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
|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 |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500만원/ 2회 이상 위반: 1천만원) |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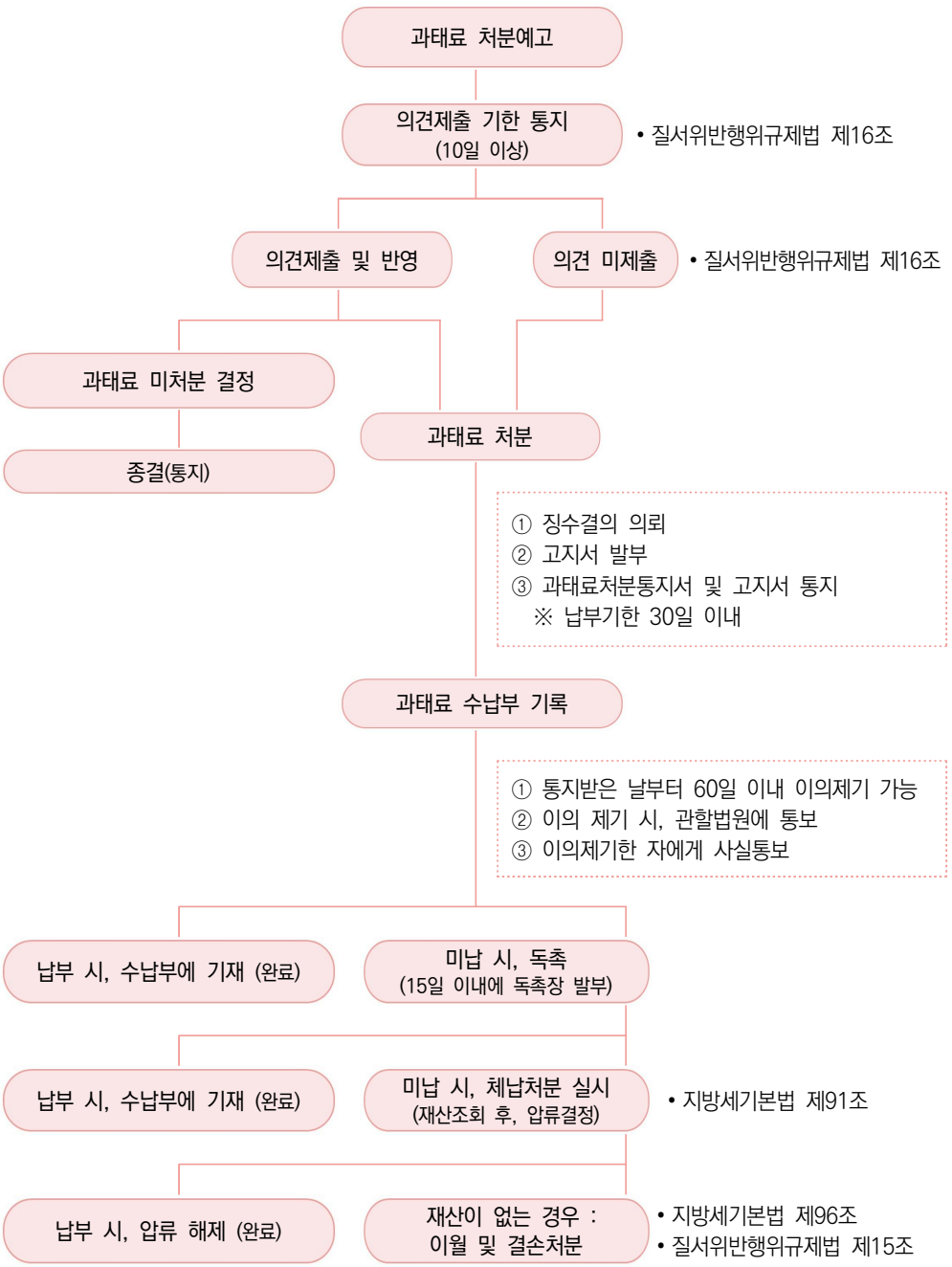


[그림 20] 과태료 부과절차 예시도

## 2 권한의 위임·위탁

### 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 [관련 조항] 법 제5조제6항
- [위임 대상] 교육장
- [위임 내용]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 나.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4항
- [위임 대상] 교육장
- [위임 내용] 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 설립을 위한 용지 선정과 관련한 교육환경평가서는 지역위원회에서 심의

### 다. 교육환경보호구역

- [관련 조항] 법 제8조제5항·제9조·제10조제5항
- [위임 대상] 교육장
- [위임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금지행위 또는 시설 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또는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철거 명령 요청

### 라. 교육환경정보시스템

- [관련 조항] 법 제12조제3항
- [위탁 대상]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 또는 지정기관
- [위탁 내용]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표 23〉 권한 위임·위탁 입법 전·후 비교

| 구분 | 학교보건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비고 |
|---|---|---|---|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 명칭변경 |
|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 모든 학교에 대하여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심의 | 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 용지 선정 시 지역위원회에서 심의 | 지역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
| 교육환경보호구역 | 설정·고시, 금지행위 등 조치 | 설정·고시, 금지행위 등 조치 | 변화없음 |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 - |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 등이 구축·운영 | 신설 |

# 부 록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3.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안)
4. 질의회신 사례
5. 공사에 관한 설명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안내서

1

# 법, 시행령, 시행규칙

www.schoolkeepa.or.kr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2.6.29.] [법률 제18636호, 2021.12.28.,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4. “학교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5.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란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고시 또는 확보된 학교용지의 경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및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2. 시행계획
3.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4.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1호에 따른 시·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도위원회 위원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해임·해촉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시·도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⑨ 시·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절차·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학교의 장의 의견수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의 이행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절차·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

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삭제 〈2021. 9. 24.〉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도시·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① 교육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활용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의 전문성·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4.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보급
5.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6.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교육·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7.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8.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9.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승인내용의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

**제17조(과태료)**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8636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11.29.,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도위원회를 대표하고, 시·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도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④ 시·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도위원회에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시·도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도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시·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시·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시·도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시·도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시·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5조제8항 단서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도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담당한다.

1. 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
2.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심의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심의
5.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심의

**제11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직원, 관련 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지역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지역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역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회의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는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교의 장이 그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⑥ 지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3.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4.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육환경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2. 제1항제2호의 내용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

③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목적, 규모 및 사업 등을 위한 공사의 예상 기간 등을 기재
2. 제1항제2호의 내용: 평가 대상에 관한 조사자료 및 현황 등을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3. 제1항제3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
4. 제1항제4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을 기재

④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2. 법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2의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등인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나. 가목 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3.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⑥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 학교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⑦ 교육감은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서작성자에게 이를 보완하여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제16조제7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에게 보완하여 작성·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완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장(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서작성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와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 및 그 사유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결과(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시·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제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설정일자
2. 설정된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설정된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② 교육감은 보호구역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보호구역임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란 폐교 또는 이전(移轉)이 완료되기 전에 폐교 또는 이전 대상 학교의 기존 학교용지를 활용하여 다른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계획을 교육감에게 인정받은 경우로서 교육감이 그에 관한 사항을 정보시스템 또는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한 경우를 말한다.

⑤ 교육감(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관련된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그 시·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임목(林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2) 또는 제3호가목2)에 따른 파쇄·분쇄 시설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따른 멸균분쇄 시설

② 법 제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신고 규모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용 산소 공급 시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설치하는 소방·의료용 시설
   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
   나.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③ 법 제9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④ 법 제9조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業)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의 가족호텔업

⑤ 법 제9조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말한다.

**제2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권한의 위임)** 교육감(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24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이하 이 조에서 “관리”라 한다)을 한다. 다만,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의 관리는 보호구역을 설정한 자가 한다.

②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한다.

1. 상·하급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로 한다.
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에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한다.

**제25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한다.

**제26조(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내용 및 제출 기한 등
2. 제17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기한 및 절차
3.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 및 절차
4. 제20조에 따른 사후교육환경평가의 작성 내용 및 제출 기한 등
5.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의 제외 및 적용 대상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33004호, 2022.11.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㊴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4.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4.27.,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⑤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영 제21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표지판을 말한다.

**제6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영 제24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 관리 및 보호구역 관리의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교육감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개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설정·고시 현황
2.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
3.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위반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65호, 2022.4.27.〉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안내서

2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www.schoolkeepa.or.kr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9.4.1.] [교육부고시 제2019-176호, 201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구역 등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시행 이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청이 취소되었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반려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이 규정은 평가서 등의 수립 기준에 따라 기술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에 기타 기술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평가서 등의 보완 등)** ① 평가서 등을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본다.

1. 조사항목의 근거 통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현황을 측정하거나 영향 예측이 허위 또는 부실하게 측정되거나 분석된 경우
3. 조치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현가능한 계획인 것으로 평가하여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재작성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일반요건)** ① 평가서 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예측하고 조치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평가서 등의 내용 중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부분 하도급의 경우 도급받는 부분 및 도급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서 작성방법 등)** ① 영 제16조제3항 각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 대상 중 일조에 대한 분석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전체 평가서 내용에 대한 요약문과 종합평가 결과를 별도로 첨부하여야하며, 작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3과 같다.

③ 평가서 등 작성 시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서류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제6조(현황조사)** 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문헌 등의 기존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영향예측 및 분석)** ① 현황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인자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교육환경 영향 요인을 예측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지점, 예측단위, 예측식 등을 선정하고 적용한 예측식, 모델링은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③ 사업대상지 또는 교육시설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사업을 명시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제8조(조치계획의 수립)** ① 제6조 내지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 및 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 영향을 저감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저감 또는 예방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조치계획 수립 전·후로 구분하여 영향 예측·분석을 실시하고 저감 또는 예방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환경 중심의 조치계획이 기술되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평가서에 제시하는 조치계획은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효과적인 조치계획으로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영향 예측·분석 결과에 따라 수립된 조치계획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요청할 경우 요청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와 조치계획 이행 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방안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서의 분량)** 평가서 등의 분량은 긴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계획서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면· 도표·사진·그림 등을 활용하여 본문은 100면 이내로 하고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평가서의 제출 및 부수)**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5일 이내에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평가서는 최소 5부로 하되, 사업대상지 주변에 다수의 학교가 위치한 경우에는 제출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서 등의 보완)** 사업시행자는 교육감에게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평가서 등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 등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작성할 수 있다.

**제13조(변경서류 내용)** ①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변경 전과 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시한다.

②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항목별로 조사·예측하고 평가결과는 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분석·정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예측 및 평가 결과가 변경 전과 달라져 교육환경 보호방안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조치계획에 반영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9-176호, 2019. 2.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교육환경평가 항목별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별표2]** 학교 일조 분석방법 및 내용
**[별표3]** 요약문 및 종합평가결과 작성방법
**[서식1]**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신청서

## [별표 1] 교육환경평가 항목별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 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
|---|---|---|
| Ⅰ.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 | |
| | 1. 사업 배경 및 목적 | • 학교용지 선정 또는 기존학교 학습환경 보호와 관련된 사업 배경과 목적, 필요성을 기술하고 사업지역 위치도를 제시함 |
| | 2. 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 | • 교육환경평가 협의요청 시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추진경위를 기술하고 각 절차별로 추진일정과 주요 내용을 기재함<br>• 평가협의 완료 후부터 최종 운영관리 단계까지의 관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간략히 기재함 |
| | 3. 사업내용<br>가. 사업 일반현황 |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면적, 인구 및 세대수,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등 일반현황을 기술함 |
| | 나. 토지이용계획 등 | • 토지이용계획을 용도별로 기재하고 토지이용계획도 등 사업지역의 토지이용을 알 수 있도록 표, 도면을 활용하여 제시함<br>• 건축계획이 수립된 경우 건축개요(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등 건물규모 등), 건물배치도 등 건축계획을 알 수 있도록 표와 도면을 활용하여 제시함 |
| | 4. 실시근거 | •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함<br>• 교육환경평가 심의(보완) 이력이 있는 경우 추진경과, 심의(보완)결과 및 사유 등을 정리함 |
| | 5. 대상 설정 | • 교육환경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함<br>• [학교용지 선정 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들어서는 학교용지의 배치현황과 배치개념을 기술함<br>• [기존학교 학습환경 보호 시] 사업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 현황을 조사함<br>– 위치, 면적, 학생수 및 학급수, 시설배치, 통학구역 등 일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 도면 등을 활용하여 제시함 |
| Ⅱ.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 | • 평가대상별로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순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육환경 영향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기술하고 조치계획을 강구하는 항목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함<br>•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학교의 교육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함<br>•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함<br>• 각 항목별 현황조사 내용이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br>•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활용이 가능함 |
| Ⅲ.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 | |

| 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
|---|---|---|
| | 1. 위치 | |
| | 가. 일반사항 | |
| | 1) 교지가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될 것 | |
| | ①조사항목 | • 공원 및 녹지축 계획(현황)<br>• 공원 및 녹지축과 학교용지간 이격거리 |
| | ②조사범위 | •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기존자료 조사 |
| | ④조사결과 | • 공원 및 녹지축 현황 및 학교용지와 이격거리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2) 교지와 도서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인접될 것 | |
| | ①조사항목 | •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현황)<br>• 공공문화체육시설과 학교용지간 이격거리 |
| | ②조사범위 | •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계획 등 기존자료 조사 |
| | ④조사결과 | • 학습환경에 유리한 공공문화체육시설 현황 및 학교용지와 이격거리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3)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청의 중장기적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에 부합될 것 | |
| | ①조사항목 | • 해당 교육청의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br>• 학생수 추계 및 학교설립 수요 |
| | ②조사범위 | • 통학구역, 학구(군) |
| | ③조사방법 | • 해당 교육청과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 협의<br>• 계획세대수 및 유발 학생수, 인근학교 현황 등 학교설립 수요 조사 |
| | ④조사결과 | • 학교용지 위치와 수, 면적, 학생수, 학급수 등을 도표로 분석정리<br>• 학교설립 수요 조사내용, 해당 교육청의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 부합여부 기술 |
| | 나. 통학범위 | |
| | 1)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 |
| | ①조사항목 | • 통학권 중심<br>• 학교용지와 통학권 중심간 이격거리<br>• 주 학생유발지역 |

| 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
|---|---|---|
| | ②조사범위 | • 통학구역, 학구(군) |
| | ③조사방법 | • 토지이용계획, 주거지 밀도계획 등 기존자료 조사<br>• 통학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가상통학권 설정 |
| | ④조사결과 | • 통학권 중심과 학교용지 경계선까지 이격거리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br>• 주 학생유발지역과 학교용지간 위치관계 기술 |
| | 2)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적당한 거리일 것 | |
| | ①조사항목 | • 통학거리 및 통학소요시간 |
| | ②조사범위 | • 통학구역, 학구(군) |
| | ③조사방법 | • 토지이용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 • 학교용지 중심에서 주거단지 중심까지 최대도보 통학거리, 통학소요시간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다. 통학안전 | |
| | 1) 교지가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과 인접되지 않을 것 | |
| | ①조사항목 | • 교통유발시설(시장, 할인점, 주차장, 전시장, 상업·업무용지 등) 계획(현황)<br>• 교통유발시설과 학교용지간 이격거리<br>•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통학로 교통량 영향 정도 |
| | ②조사범위 | • 학교인접도로 및 연결도로 |
| | ③조사방법 | • 토지이용계획도, 교통계획도, 교통량 예측자료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 • 교통유발시설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2) 교지 인접도로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 |
| | ①조사항목 | • 학교용지 인접도로 계획(현황)<br>– 접도개수, 도로폭, 차선수, 도로형태 등<br>• 학교용지 인접도로 기능 |
| | ②조사범위 | • 학교인접도로 |

| 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
|---|---|---|
| | ③조사방법 | • 교통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 • 학교용지 인접도로 현황, 도로기능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3) 학교 통학로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게 설치될 것 | |
| | ①조사항목 | • 통학권 내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4차선 이상도로계획(현황)<br>• 횡단이 예상되는 지점 위치 및 개수, 도로현황 |
| | ②조사범위 | • [초등학교] 통학구역<br>• [중·고등학교 등] 학교용지로부터 500m 이내 |
| | ③조사방법 | • 교통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4차선 이상 도로 횡단지점 조사 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4) 학교 통학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되고, 2미터 이상의 유효 보도폭이 확보될 것 | |
| | ①조사항목 |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계획(현황)<br>• 통학로 유효 보도폭 |
| | ②조사범위 | • 통학구역, 학구(군) |
| | ③조사방법 | • 교통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통학로 연계 여부, 유효 보도폭 조사 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5) 인근 아파트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 가) 학교의 학생주출입구는 집산도로 이하 주 통학로에 설치하며 차량출입구는 분리 설치<br>나) 인근 아파트단지 또는 건물의 차량 진출입구와 학생 주출입구는 이격 배치 |
| | ①조사항목 | • 아파트단지 또는 건물 차량 진출입구 계획(현황)<br>• 학교교문(학생주출입구, 차량출입구) 설치 계획 |
| | ②조사범위 | • 학교인접도로 |

| 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
|---|---|---|
| | ③조사방법 | • 토지이용계획도, 교통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 조사<br>• 아파트 단지 또는 건물 출입구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통학안전을 고려한 출입구 위치 예상 |
| | ④조사결과 | • 아파트단지 또는 건물 차량진출입구와 학교교문 위치 및 거리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6) 해당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학생의 통학에 지장 또는 위험이 발생되지 않을 것 | 가) 통학로에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신호기 등을 설치할 것<br>나) 통학로에는 공사 중 보행공간의 유효폭을 2m 이상 충분히 확보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것<br>다) 절대보호구역(50m) 내에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br>라) 등하교시간에는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에 차량진출입을 제한할 것<br>마)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설치반경이 학교부지 및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를 침해하지 않을 것 |
| | ①조사항목 | • 학생 통학로, 교문 위치 조사<br>• 건설공사장 진출입구, 공사차량 이동 동선 조사<br>• 도로단절·폐쇄 등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조사<br>•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 위치, 종류, 운행반경 조사<br>• 공사 중 통학안전 대책 |
| | ②조사범위 | • 학교 및 건설공사장 인접지역(부지 내 포함) |
| | ③조사방법 | • (현황) 통학로는 현지조사 및 학교와 사전협의<br>• (공사 중) 건설공사장 진출입구, 공사차량 이동 동선, 건설기계 운행 반경, 도로환경 변화 예측 및 통학안전 영향 분석 |
| | ④조사결과 | • 공사 중 통학로와 공사차량 이동 동선 상충정도 분석 및 안전표지·시설물 설치계획 제시<br>• 공사 중 통학로 도로환경 변화 정도 분석 및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계획 제시<br>• 학교 교문과 건설공사장 진출입구 위치관계 분석 및 최대 이격거리 확보방안 제시<br>• 통학로와 공사차량 이동 동선 상충정도 분석 및 등하교시간 공사차량 진출입 제한대책 제시<br>• 건설기계 운행 반경이 학교부지 및 통학로 침해정도 분석 및 안전대책 제시 |
| | 라. 일조량 | |
| | 1)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 | |
| | ①조사항목 | • 학교용지 주변의 통풍 및 햇빛을 방해하는 건물, 지형 등 장애요인 계획(현황)<br>- 토지이용, 건물 종류·밀도·층수·용적률 등 |
| | ②조사범위 | • 학교용지 인접지역 |

부록

| 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
|---|---|---|
| | ③조사방법 | • 토지이용계획도, 공동주택배치도, 지형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 • 학교용지 주변 동,서,남,북 방향의 건물, 지형 등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2) 교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 가)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규칙 별표1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br>나)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 |
| | ①조사항목 | • 일조 피해건물 현황<br>• 일조 가해건물, 지형, 구조물 등 현황<br>• 사업 전·후 물리적 환경 변화<br>• 사업으로 인한 학교 일조권 영향 |
| | ②조사범위 | • 교지 및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 건축물 또는 구조물, 지형이 나타난 수치지형도 등 기존자료 활용, 일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환경 현장조사<br>• 토지이용계획도, 공동주택배치도 등 기존자료 조사<br>• 필요시 일조분석 전문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시<br>• 세부방법은 별표2 참고 |
| | ④조사결과 | • 교지에 인접한 대지 및 건축물, 구조물 등에 의한 일조권 침해 가능성 분석·정리<br>• 택지개발지구 등 예정지의 경우 인접 대지의 용도와 레벨을 고려하여 분석<br>• 일조분석 시뮬레이션 시 사업시행 전·후 학교 일조시간 분석 및 기준 침해 여부를 도면, 도표로 정리<br>- 분석조건 및 분석도구, 일조면 및 분석지점<br>- 사업시행 전·후 일영차트<br>- 사업시행 전·후 30분 단위 일영도<br>- 쟁점이 되는 지점은 상세 일영도 제시<br>- 일조기준 불만족시 원인 조사 |
| | 2. 크기 및 외형<br>가. 교지면적 | |
| | 1)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br>나) 특수학교는 「특수학교시설 · 설비기준령」 제2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br>다) 대학은 「대학설립 ·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br>라) 기술대학은 「기술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 |

| 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
|---|---|---|
| | | 마) 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체육장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름 |
| | ①조사항목 | • 학교별 대지면적, 학생수, 학급수 등<br>• 마)의 경우, 주변 공공운동장 및 종합체육시설 현황 |
| | ②조사범위 | • 학교용지<br>• 마)의 경우,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 법정 기준면적 만족여부 조사<br>• 해당 교육청 자체 기준면적 부합여부 조사<br>• 마)의 경우, 공공운동장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 가능 여부 조사 |
| | ④조사결과 | • 기준면적 부합여부 조사내용을 도표로 분석·정리<br>• 마)의 경우, 이용가능한 공공운동장 및 종합체육시설 현황과 완화하고자 하는 체육장 면적 기술 |
| | 나. 교지형태 | |
| | 1)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 배치가 가능할 것 | |
| | ①조사항목 | • 대지형태, 장단변비, 교사동 및 옥외공간 배치계획 등 |
| | ②조사범위 | • 학교용지 |
| | ③조사방법 | • 토지이용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br>• 해당 교육청 의견 반영 |
| | ④조사결과 | • 학교부지 형태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3. 지형 및 토양환경 | |
| | 가. 지형 및 경사도 | |
| | 1)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설치 등 공사가 용이한 부지일 것 | |
| | ①조사항목 | • 경사, 표고, 지반안전성 등<br>• 학교용지 부지조성계획 |
| | ②조사범위 | • 학교용지 및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 공사계획 평면도, 지형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br>• 학교용지 부지조성계획 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
| | ④조사결과 | • 경사, 표고 등 지형 조사내용과 학교용지 부지조성계획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나. 풍수해 | |
| | 1) 교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 |

| 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
|---|---|---|
| | ①조사항목 | • 과거 10년간 풍수해 등 재해이력<br>• 자연재해위험지구 또는 관련 구역 지정 현황 |
| | ②조사범위 | • 학교용지 및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 기상청 자료, 지구·구역 지정 관련 기존자료 조사 |
| | ④조사결과 | • 과거 10년간 재해이력과 재해지구·구역 지정현황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다. 교지의 과거이용상황 등 | |
| | 1)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및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 |
| | 2)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및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 |
| | 3) 그 밖에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켰던 지역이 아닐 것 | |
| | ①조사항목 | • 과거 10년간 토지이용 이력<br>• 학교용지 지목 및 건축물 현황 |
| | ②조사범위 | • 학교용지 및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 • 학교용지 지목 및 건축물 현황, 과거 10년간 토지이용 이력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br>• 토양오염 개연성 기술 |
| | 라. 토양환경 등 | |
| | 1)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일 것 | |
| | ①조사항목 | • 토양오염 우려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 |
| | ②조사범위 | • 학교용지 |
| | ③조사방법 | • 토양오염 측정 |
| | ④조사결과 | • 토양오염 측정 결과를 도표로 분석·정리<br>•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저감대책 제시 |
| | 2) 지표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하천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
|---|---|---|
| | ①조사항목 | • 수질 환경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 |
| | ②조사범위 | •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 수질 측정 |
| | ④조사결과 | • 수질 측정 결과를 도표로 분석·정리<br>•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저감대책 제시 |
| | 4. 대기환경 | |
| | 가. 대기질 | |
| | 1)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 |
| | ①조사항목 | • 대기오염 유발원<br>• 대기 환경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br>• 대기오염 영향 예측(건축물 철거 시 석면 영향 포함)<br>• 대기오염 저감대책 |
| | ②조사범위 | • 교지 및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 대기질 측정·예측,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준용 |
| | ④조사결과 | • 대기오염 유발원 분포, 대기질 측정·예측 결과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br>• 영향이 있을 경우 저감대책 제시(건축물 철거 시 석면폐기물 처리대책 포함) |
| |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발생하는 악취가「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 |
| | ①조사항목 | • 예상되는 악취 유발원<br>• 악취배출허용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br>• 사업시행에 따른 악취 영향 예측 |
| | ②조사범위 | • 학교용지 인접지역 1km 이내 |
| | ③조사방법 | • 악취 측정·예측,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준용 |
| | ④조사결과 | • 악취) 유발원 분포, 대기질(악취) 측정·예측 결과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br>• 영향이 있을 경우 저감대책 제시 |
| | 나. 소음 및 진동 | |
| | 1) 교지 내 소음·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 |

| 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
|---|---|---|
| |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 |
| | ①조사항목 | • 소음·진동 유발원<br>• 소음·진동 현황<br>• 소음·진동 영향 예측 |
| | ②조사범위 | • 교지 및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 소음·진동 현황 측정,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준용<br>• 소음·진동 영향 예측 |
| | ④조사결과 | • 소음·진동 유발원 분포, 소음·진동 현황 측정 결과, 소음·진동 영향 예측 결과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br>• 소음·진동 기준 초과 시 저감대책 제시 |
| | 5.주변유해환경 | |
| | 가.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
| | 1)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 |
| | ①조사항목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 | ②조사범위 | • 학교용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
| | ③조사방법 | • 건축물 대장 등 기존자료 조사 또는 현지조사<br>• 해당 교육청 사전 협의 |
| | ④조사결과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유무, 현황을 도면, 도표로 정리<br>•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절대적 금지시설 포함)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 경우 이전·폐쇄 방안 제시 |
| | 나. 그 밖의 공공시설 | |
| | 1)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에 위험시설이 가급적 없을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br>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br>다)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br>라) 공항, 철도, 고가도로, 터미널,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또는 주유소<br>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br>바) 「경륜 · 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 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
|---|---|---|
| | | 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br>아) 그 밖에 학생의 건강,안전 등에 위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 | ①조사항목 | • 위험시설 분포, 종류, 규모 등 현황<br>• 위험시설 영향 예측 |
| | ②조사범위 | • 학교용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
| | ③조사방법 | • 위성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 • 위험시설 현황 및 영향 예측 결과를 도면, 도표로 정리<br>• 위험시설이 있을 경우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제시 |
| | 6. 공공시설 | |
| | 가. 기반시설 | |
| | 1)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의 기반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 |
| | ①조사항목 | •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하수시설 관로 현황 및 설치계획 |
| | ②조사범위 | •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 상하수도 관로 등 기존자료 조사 |
| | 나. 그 밖의 공공시설 | |
| | 1) 그 밖에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 |
| | ①조사항목 | • 기타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 현황 및 설치계획 |
| | ②조사범위 | •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 공공시실 현황 및 설치계획 |
| | ④조사결과 | • 기반시설 현황 및 설치계획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이용가능 여부 기술 |
| Ⅳ.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 1. 조치계획 종합 | • 조치계획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별로 종합·정리함 |
| | 2. 조치계획 시행주체 및 시기 | • 개략적인 사업추진 일정표와 함께 조치계획 적용 시기, 시행주체에 대한 사항을 제시함<br>•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별표 2] 학교 일조 분석방법 및 내용**

## 학교 일조 분석방법 및 내용

**1. 분석전제**

**가. 용어 정의**

1) “교사”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내시설로 건축법에서 ‘거실’로 인정되는 실을 말한다.

2) “체육장”이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실외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학교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예정이거나 고시된 학교용지를 말하며 유치원, 대안학교 및 특수학교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한 설립예정지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포함한다.

**나. 학교 일조시간 기준 적용**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경우 분리 사용되는 시설은 각각의 학교 일조시간 기준을 적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하급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한다.

2) 학교 이전 등으로 학교용지 안에서 교사의 위치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 학교용지 전체에 대하여 교사 일조시간 기준을 적용한다.

**2. 분석방법**

**가. 교사의 일조면 설정**

1) 일조면은 교사 각각의 창문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2) 화장실, 창고, 계단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이용되지 않거나 향후 건축구조적으로 교수학습활동을 위해 이용하기 곤란한 시설로 건축법에서 ‘거실’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분석대상면에서 제외한다.

3) 하나의 실이 두면 이상 외부에 면하는 실의 경우 외부에 직접 면한 각 외벽의 일조시간을 합산하여 일조시간 만족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해당실이 복도 등 ‘거실’이 아닌 실에 면하는 경우에는 복도 등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외벽 창면의 일조시간 합산으로 일조시간 만족 여부를 판정한다.

4) 교사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아 학교용지 전체를 일조면으로 설정하는 경우 체육장의 일조면 설정방법을 적용하며 평균 대지조성높이(GL : Ground Level)는 1.5미터를 더하여 산정한다.

**나. 체육장 일조면 설정**

1) 체육장은 학교용지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후퇴한 선의 내부를 적용한다.
2) 체육장 일조면은 학교용지 정중앙을 기준점으로 하고 10미터×10미터 이하로 크기를 등분하여 분석한다.

**다. 분석대상 설정**

학교 주변의 자연환경, 기존건물, 건축 중에 있는 건물(정비구역의 순차적 지정 등으로 학교 일조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행 중이거나 기 승인된 사업 포함) 등 학교 일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다.

**3. 분석내용**

**가. 일조피해 건물, 일조가해 건물, 인접건물 현황**

1) 각 건물의 용도, 층수, 지붕 층의 높이, 최고 높이
2) 건물들 간의 수평적 이격거리
3) 건물들 간의 수직적 높이 차

**나. 일조분석 설정 데이터**

1) 대상 지역의 위도 및 경도
2) 진태양시 설정여부
3) 진북설정 여부 및 도편각 각도
4) 일조분석 대표일의 매 시간별 태양의 고도각 및 방위각

**다. 분석방법**

1) 일조분석 기법 및 분석 도구
2) 일조분석 방법
3) 일조면의 위치 및 크기
4) 일조분석 시간간격

**라. 분석결과**

1) 각 일조면에 대한 일조분석 결과도표
2) 일조분석 방법 및 기법을 파악 가능한 30분 단위 시뮬레이션 이미지

## [별표 3] 요약문 및 종합평가결과 작성방법

| 구분 | 기재사항 | 작성방법 |
|---|---|---|
| Ⅰ. 요약문 | 1. 사업의 내용 | • 사업 일반현황, 학교용지 배치계획 또는 교육시설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함 |
| | 2. 종합평가 | • 평가항목에 따른 영향예측 결과와 조치계획을 파악하기 쉽도록 학교별로 작성하여 도표 등으로 종합적으로 제시함 |
| | 3. 조치계획 | • 조치계획의 적용 시기, 시행 주체 등 실행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함 |
| Ⅱ. 종합평가 결과 | 1. 종합평가 | • 각 평가대상·항목·기준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냄<br>• 정량적인 평가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평가내용을 기술하여 종합평가를 내림<br>• 복수안의 평가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비교법 등을 통한 각 대안을 비교 평가함 |
| | 2. 학교별 평가 | • 평가기준에 따른 영향예측 결과와 조치계획을 학교별로 작성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특징을 기술함 |
| Ⅲ. 부록 | | •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현황조사 근거자료, 영향예측 근거자료,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br>• 일조시뮬레이션 보고서 |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45일 |
|---|---|---|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사업 현황 | 사업명 |
| | 위치 |
| | 면적 |

| | 구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고등학교 | 기타학교 | 대학교 | 계 |
|---|---|---|---|---|---|---|---|
| 학교 현황 | 학교수 | | | | | | |
| | 면적 | | | |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교육청 교육감** 귀하

| | |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교육환경평가서 | 수수료 없 음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전문기관) | → | 시·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 심의 | → | 결재 | → | 결과서 통보 |
|---|---|---|---|---|---|---|---|---|---|---|
| 신청자 | | 교육청 | | 교육청 | | 교육청 | | 교육청 | | 신청자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록

3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안)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6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교육환경평가서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교육환경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망을 말한다.

② “운영기관”이라 함은 **「교육환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위탁 구축·운영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라 함은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연계·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하기관, 운영기관 등 교육환경 관련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사용자와 사업시행자, 정보시스템 일반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정보시스템 운영방향)** 정보시스템 운영은 교육환경보호제도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문성, 안정성, 효율성,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정보시스템의 설치장소)** 정보시스템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이 설치장소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별 주요임무)**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구분 및 주요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자의 정보이용 등급설정)**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정보이용 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교육환경평가서 정보의 등록)**

① 정보시스템의 정보 등록 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교육환경법」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후교육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를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 등'이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환경평가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정보공개 동의서를 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정보가 정보시스템에 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신청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육환경평가정보를 확인하여 「교육환경법 시행령」제1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한 보완 사항이 완료된 경우에는 승인신청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의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 이를 운영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등이 정보시스템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정보 전산등록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사항을** 운영기관과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한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반영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 기한은 **승인이 통보된 다음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 제9조(교육환경평가서 정보의 공개)

① 교육감은 「교육환경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가 승인이 완료된 때에는 같은법 제6조제7항 및 1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완료된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받아 비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 등은 **승인결과 통보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 검토결과서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비공개 범위 등에 대한 결정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이 **등록된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과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이 통보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 제6항에 따라 등록된 교육환경평가서에 비공개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교육환경평가 관련 정보의 정보시스템상 공개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⑥ 정보시스템의 교육환경평가서 등록 및 공개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⑦ 운영기관은 제5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등의 내용이 누락없이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승인결과 이행 정보 등록 등)

① 교육감은 **「교육환경법」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조사 결과 등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항목·절차·기준 등을 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환경보호구역 정보의 등록·공개)**

① 교육감은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교육환경법」 제9조**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와 위반 현황 및 **같은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조치 내역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①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서면으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전산자료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여부를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전산자료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운영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신청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전산자료 유지·관리)** 운영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 관리)** 교육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운영기관은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입출력 자료 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연 1회 이상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등은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백업)** ① 운영기관은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보고)** 이 지침에 따라 입력하거나 등록되는 정보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법령 등에 따른 자료의 보고·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예규)**에 대하여 **2022년 월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본 규정 시행일 이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신청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 구분 | 주요임무 |
|---|---|
| 교육청 업무담당자<br>(제도담당자) | 1. 교육환경평가서 등록 정보 확인 및 확인 사항 운영기관 통보<br>2. 교육환경평가서 공개범위 결정<br>3. 공개가 결정된 교육환경평가서의 운영기관 통보<br>4. 정보시스템에 「교육환경법」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 조사결과 등록<br>5.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운영기관 통보<br>6.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결과의 운영기관 통보<br>7.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 위반자와 그 위반내역에 대한 운영기관 통보 |
| 운영기관<br>업무담당자<br>(내부사용자) | 1. 사업시행자 등에게 교육환경평가정보 전산등록완료 확인서 발급<br>2.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공개대상 교육환경평가서를 정보시스템에 등록<br>3.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 대한 심의결과와 위반자 및 위반내역을 정보시스템에 등록<br>4.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육환경평가서 **보존(백업)**<br>5. 교육청, 사업시행자, 평가대행자, 일반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등급 부여 및 관리<br>6.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사업시행자 및<br>평가대행자<br>(평가관련자) | 1. 법 제6조의 교육환경평가서, 제7조의 사후교육환경평가서 등 사업정보 입력<br>2.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료 제공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36조 제5항은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과 복원기능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전자기록물의 저장, 이관, 백업, 복원, 보존 등을 위한 기록매체 및 장치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업"이라고 하거나, 최소한 보존(백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문언상 맞을 것이라 사료됨

## [별표 2]

| 등급 | 대상 | 이용가능정보 |
|---|---|---|
| Ⅰ | 내부 사용자(운영기관 담당자) | 교육환경평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자료일체 |
| Ⅱ | 제도 담당자(교육청 담당 공무원) | 해당 관내 교육환경평가서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자료 일체 |
| Ⅲ | 평가 관련자<br>(사업시행자 및 평가대행자) |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 |
| Ⅳ | 일반이용자(위 등급이외의 자) | 공개된 교육환경평가서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내용의 열람 |

[별표 3]

## 교육환경평가시스템 등록 및 공개 절차

(별지1: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별지2: 교육환경평가 정보공개 동의서)

(별지3: 교육환경평가정보 전산등록완료 확인서)

(별지4: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서)

(별지5: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 검토결과서)

**[별지 1]**

#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환경평가서 내의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대국민 공개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교육청에서는 평가서의 공개절차 상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소속, 자격번호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작성·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 내 내용 확인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청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교육청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연번 | 성명 | 개인정보 이용동의<br>(해당란에 체크) | 개인정보 제공동의<br>(해당란에 체크) | 서명 |
|---|---|---|---|---|
| | | □ 동의 □ 비동의 | □ 동의 □ 비동의 | |
| | | □ 동의 □ 비동의 | □ 동의 □ 비동의 | |

20○○년 ○○월 ○○일

**○○○○교육감 귀중**

[별지 2]

# 교육환경평가 정보공개 동의서

| | | |
|---|---|---|
| 자료 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 연락처: | |

자료목록

| 연번 | 자료명칭 | 수량 | 제작자 성명 |
|---|---|---|---|
| | | | |
| | | | |
| | | | |

상기 본인(본 단체)은 위 제출한 자료(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관련하여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필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필수)**

※ 상기 제출 자료(동영상, 이미지 등)가 학술연구와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전시, 공개, 복제, 촬영, 2차 저작물 작성 등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자료제공자: (서명 또는 인)

| | |
|---|---|
| 자료제공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 상의 제한사항 | |

**[별지 3]**

# 교육환경평가정보 전산등록완료 확인서

## 1. 평가개요

<table>
<tr><td>사업코드</td><td colspan="4">(시스템등록번호 : ○○○○○○○○○○○○)</td></tr>
<tr><td rowspan="5">평가유형</td><td rowspan="3">신설학교( )</td><td colspan="3">단독 학교설립( )</td></tr>
<tr><td colspan="3">도시·군관리계획 입안( )</td></tr>
<tr><td colspan="3">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 )</td></tr>
<tr><td rowspan="2">기존학교( )</td><td colspan="3">정비사업( )</td></tr>
<tr><td colspan="3">건축법 제11조 제1항( )</td></tr>
<tr><td>평가진행단계</td><td colspan="2">신규( ),<br>재심의/변경심의( ), 사후평가( )</td><td>차수</td><td></td></tr>
<tr><td>사업구분</td><td colspan="4"></td></tr>
<tr><td>사업명</td><td colspan="4"></td></tr>
<tr><td>진행사업명<br>(보완의 경우 해당)</td><td colspan="4"></td></tr>
<tr><td>기존사업명<br>(재심의, 변경심의,<br>사후평가에 해당)</td><td colspan="4"></td></tr>
<tr><td>평가서 공개동의</td><td colspan="4">공개/비공개 (*비공개인 경우 비공개요청서 함께 제출 대상)</td></tr>
<tr><td>평가대상</td><td>학교수</td><td>( )개교</td><td>학교명</td><td></td></tr>
</table>

## 2. 사업시행자 및 평가서 작성자 정보

| 업체명 | | 시스템 ID | |
|---|---|---|---|
| 작성자 연락처<br>(휴대전화) | | E-Mail | |

## 3. 평가서 접수일

| 교육환경평가서<br>전산등록완료일 | 20 년 월 일 |
|---|---|
| 교육(지원)청 담당자 (성명기입) 확인 | |

[별지 4]

#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서

| | |
|---|---|
| ① 사업명 | |
| ② 비공개 요청 대상 | □ 교육환경평가서<br>□ 사후교육환경평가서 |
| ③ 비공개 요청 사유 | |
| ④ 비공개 요청 범위 | □ 전부 비공개<br>□ 일부 비공개 (비공개 대상범위: ) |
| ⑤ 추후 공개 가능 시기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비공개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교육감 귀하**

**※ 작성방법**

① "사업명"란은 교육환경평가서 등에 제시한 사업명을 기재한다.

② "비공개 요청대상"란은 비공개하고자 하는 교육환경평가서 등에 "∨"표를 한다.

③ "비공개 요청사유"에는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및 교육환경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를 요청하여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 요청범위"에는 해당 부분에 "∨"표를 하고, 일부 비공개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⑤ "추후 공개 가능시기"란에는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준공 후" 또는 "공개 불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⑥ "신청인"은 사업시행자 명의로 신청한다.

**[별지 5]**

#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 검토결과서

<table>
<tr><td>① 사업명</td><td colspan="2"></td></tr>
<tr><td>② 공개 요청 범위</td><td colspan="2">☐ 일부 비공개 (비공개 대상범위: )<br>☐ 전부 비공개</td></tr>
<tr><td rowspan="9">③ 비공개 대상 유형<br>(중복 선택 가능)</td><td rowspan="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td><td>☐ 1호 법령 등에 따른 비공개 규정 정보</td></tr>
<tr><td>☐ 2호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td></tr>
<tr><td>☐ 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td></tr>
<tr><td>☐ 4호 재판, 범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법 집행의 오류 초래 정보</td></tr>
<tr><td>☐ 5호 감사, 검사, 시험, 입찰계약, 인사,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 과정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td></tr>
<tr><td>☐ 6호 특정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td></tr>
<tr><td>☐ 7호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td></tr>
<tr><td>☐ 8호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td></tr>
<tr><td colspan="2">☐ 기타(④요청사유에 관련법률 조항 또는 객관적 근거사유 제시)</td></tr>
<tr><td>④ 비공개 요청사유</td><td colspan="2"></td></tr>
<tr><td>⑤ 검토 결과</td><td colspan="2"></td></tr>
</table>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검토 결과입니다.

년 월 일

**※ 작성방법**

① "사업명"란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신청서"등에 제시한 사업명을 기재한다.

② "공개 요청 범위"에는 해당 부분에 "V"표를 하고, 일부 비공개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비공개 대상 유형"에는 비공개 요청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부분에 "V"표를 한다.

④ "비공개 요청사유"에는 비공개 요청의 대상이 되는 평가서 상의 자료 또는 항목에 대하여 대상별 사유를 구체적으로 각각 기재한다.

[별지 6]

# 교육환경평가 정보시스템 자료요청서

| | | | | |
|---|---|---|---|---|
| 소속기관 | | | | |
| 담당자 | 성명 | | 부서명 | |
| | 직급 | | 전화번호 | |
| | 휴대전화번호 | | | |
| | e-mail | | | |
| 주소 | | | | |

| | | | | |
|---|---|---|---|---|
| 신청목적 | ☐ 정책활용 | ☐ 학술연구 | ☐ 홍보자료 | ☐ 기타 |
| | ※ 상세목적 : | | | |
| 사업명 | | | | |
| 사업기간 | | | | |
| (연구)내용 | | | | |
| 기대효과 | | | | |
| 신청자료 목록 | | | | |

**[별지 7]**

# 운영기관 보관자료 제공대장

| 자료요청 | | | | | | | 자료제공 | | | | |
|---|---|---|---|---|---|---|---|---|---|---|---|
| 접수 일시 | 기관명 | 문서 번호 | 요청 근거 및 사유 | 요청 내용 | 담당자 | 연락처 | 제공 일시 | 문서 번호 | 제공 내용 | 제공 기간 | 제공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8]

## 교육환경평가 정보시스템 자료사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교육환경평가 정보시스템의 제공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교육환경평가 정보시스템의 제공자료를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제공조건 이외의 부당한 사용이나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교육환경평가 정보시스템 자료의 활용목적 및 제공조건 이외의 사용으로 발생한 모든 법적인 분쟁에 대한 책임이 자료를 제공받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교육환경평가 정보시스템의 제공자료를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명 : (인)

서약집행자 직위 : 직급 : 성명 : (인)

4

# 질의회신 사례

## 가. 교육환경보호구역

**01.**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구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전체인지 아니면 상대보호구역에만 허용을 하는 것인지?

➡ 「교육환경법」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누구든지 교육환경환경보호구역에서 관련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나 예외로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4호·15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역은 상대구역으로 한정해야 할 것임

**02.**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지정소매인이 포함되는지?

➡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의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은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03.** 유해업소의 지번이 상대보호구역 내에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 보호구역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유해업소의 지번은 저촉되지만 영업공간은 저촉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상대보호구역(200m) 내에 유해업소가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유해업소의 영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1.2.10.,선고,2010두17946, 판결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피시방 전용시설(피시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전용시설의 경계선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다면 해당 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로 보아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여 출입구가 상대보호구역 밖에 위치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나. 교육환경평가

**01.** 교육감에게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지 내 초·중등학교 외 유치원의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이 동시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 유치원만 분리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유치원 또는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사업지 내 유치원 또는 대안학교 외 초·중등학교의 용지를 선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대안학교의 경우도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할 수 있음

**02.**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교육환경평가서의 경우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와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 자료 및 현황'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규칙으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교육환경평가서는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에는 법적 필수 요건 즉, 학생수용 또는 학교 배치계획, 법정 교지면적, 일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의 설치 현황 등의 평가항목 중 학교의 급 및 학교용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을 것임

**0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 계획은 없으며, 구역 일부는 상대보호구역에 일부 저촉될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 (2018.11.)

➡ 해당 구역 내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계획은 없더라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5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포함됨

**0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에서 사업대지 우측 모퉁이의 녹지 부분은 정비구역 면적에는 포함되지만 기부채납하는 부분으로서, 주택재개발 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대지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음. 일부 녹지 부분이 인근에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일부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2018.4.)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의2나목에 따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 또는 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정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까지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 따라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시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동 사업구역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대상에서 제외됨

**05.** 「주택법」 제66조제1항 제2항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2018.11.)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택법」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 및 증축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주택법」제66조제1항 제2항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리모델링(증축)을 통하여 「건축법」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06.**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부지로써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에 의거 유치원 부지를 계획하여 사업 진행중에 있으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규모가 동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어 건축허가(주택건설 승인) 전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승인) 대상(층수 21층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10만㎡ 이상)이나, 법 개정 이전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12. 1. 12. 및 2012. 7. 16. ○○지구 내 학교설립 예정지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준용 예정(교육환경평가서 제출해당 없음).”에 따라 교육환경영향평가 제출 대상에서 제외 되었음. 이 경우 공동주택부지 내에 부대시설로 계획된 유치원도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같은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승인)에 해당하는지? (2020.4.)

➡ 공동주택부지 내 유치원을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12년 당시 ○○지구 내 학교설립을 위한 용지 선정 시 실시한 교육환경평가에 상기 유치원이 대상으로 포함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교육환경평가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0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승인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각각 21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10만㎡ 미만인 2개의 독립된 건축물을 별개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개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이라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법령해석례 18-0344, 2018.10.10〉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함)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시장 등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모의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3항제2호 본문, 제19조제4항,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8호 및 제28조제2항 등에서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에서 이와 같이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서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연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규정은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법제처 2015. 12. 17. 회신 15-0782 해석례 참조) 이지만 이와 다르게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한 규정은 복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법」 제6조에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학생의 안전이 위협되거나 학생의 건강 및 학습 환경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2013. 8. 28.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1906576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렇다면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대상이 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 즉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규모의 건축의 의미는 특정한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복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10만㎡ 미만이지만 그 건축물들의 연면적의 합산이 10만㎡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함. 또한,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의 "규모"만을 수식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비록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가 "건축허가"에 관한 규정이라 할지라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연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복수 건축물의 범위가 하나의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되는 복수의 건축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음. 그렇다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제4호), 인구 · 주택 수용계획(같은 항 제5호) 등을 포함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받고, 해당 지구계획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복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들은 모두 동일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되는 것이므로 비록 별개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들의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이 사전에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복수의 건축물을 각각 별도의 건축허가를 통해 순차적으로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복수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에 비하여 해당 건축 행위로 인한 학생의 안전 및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함.

**08.** 2016년 12월27일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사업의 설계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7년 7월, 국도부에 변경사업승인 신청을 접수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로 지자체 유관부서와 변경사업승인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음. 해당 사업은 2016년 11월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였고, 동년 12월27일에 당시의 법령에 적법하게 이미 사업승인신청에 대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사업승인 변경에 대해서는 2017년 2월부터 시행한 법령에 대해 적용을 받는지? (2017.8.)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건축법」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건축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까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 (이하,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건축법」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유는 해당 건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조, 소음,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평가하고 필요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교육환경 피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따라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사업부지 내「건축법」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

**09.** 기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시설확장을 위한 부지추가로 부지의 증가(10%이상)가 발생할 경우에 교육환경평가에 해당되는지? 또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설립 또는 이전만 해당되는지(기존 유치원의 부지확장은 해당없는지)? (2017.7.)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2조 적용범위에 따라「교육환경법」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는 학교설립을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기존학교(유치원) 부지확장의 경우는 교육환경평가를 하도록 규정한 학교설립을 위한 용지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환경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10.** 동일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18m도로로 구분된 공동주택 필지 2개 블록에 A블록 20층-연면적 8만㎡-520세대, B블록 20층-연면적 7만㎡-50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2건을 같은 시기에 진행 할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인지? (2020.10.)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0만㎡ 이상)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까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에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제4호), 인구·주택 수용계획(같은 항 제5호) 등을 포함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받고, 해당 지구계획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복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들은 모두 동일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되는 것이므로 비록 별개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들의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석(2339, 2018.7.10.)한 바 있음

**11.** 건축사업(최고층이 21층이 되지 않으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시행사가 땅을 사서 「주택법」으로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임. 최초 사업 신청은 2016년도에 했으며 반려 및 취소되지 않고 현재까지 사업이 정지되어 있다가 이제 다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여부? (2019.1.)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나,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법」 시행 이전(2017. 2.4.이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청이 취소되었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반려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됨

5

# 공사에 관한 설명

## 1. 공종별 흐름도

| | | |
|---|---|---|
| 공사준비 | ①철거공사 | 구조물 철거 및 해체 |
| | ②가설공사 |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설 및 울타리 설치 |
| 토공사 | ③토공사 |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 기초나 지하실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지반면까지 굴착하거나 메우는 공사 |
| 기초공사 | ④기초공사 |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한 기초구조물 공사 |
| 골조공사 | ⑤골조공사 | 건축물의 기둥, 벽, 바닥 등 뼈대를 만드는 공사 |
| 마감공사 | ⑦창호, 도장공사 등 | 건물 내외부 치장 공사 등 마무리 공사 |
| | ⑧조경공사 | 식재, 교통안전장치 등 마무리 공사 |

① 철거공사

- 구조물 철거 및 필요 시 석면 해체

철거

철거마대

부록

② 가설공사

- 가설울타리(판넬), 현장사무실, 가설도로, 비계, 낙하물방지망, 임시전력, 급수설비 등

가설방음판넬

현장사무실

가설도로

낙하물방지망

③ 토공사

- 터파기, 흙막이, 성토 및 절토, 발파, 잔토처리, 되메우기 등

터파기

흙막이

④ 기초공사

- 파일박기, 지반앵커공사, 자재운반, 타워크레인설치, 기초거푸집 설치 등

파일박기

타워크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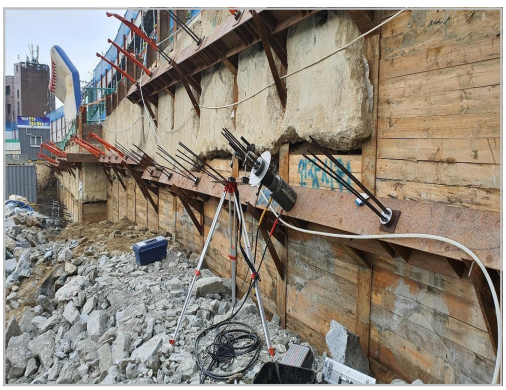

앵커공사

기초 거푸집

⑤ 골조공사

- 철근 조립, 거푸집 조립 및 철거, 콘크리트타설 및 굳히기, 설비공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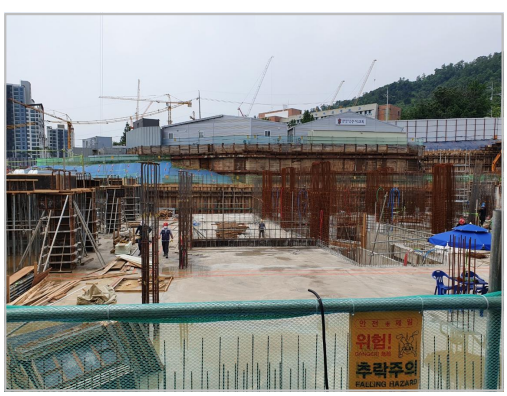


철근 조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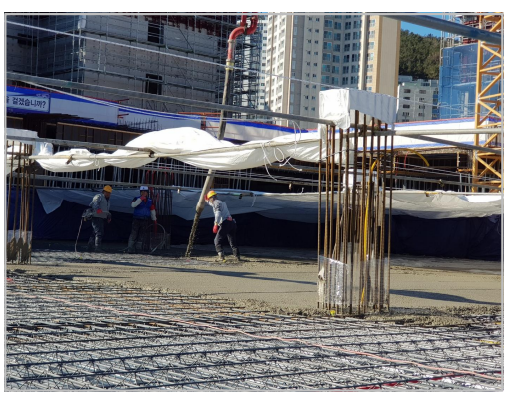

콘크리트 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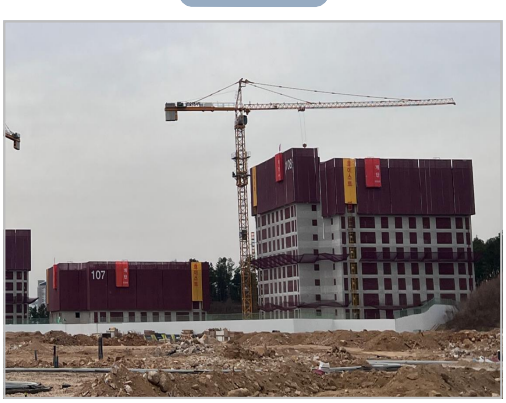

갱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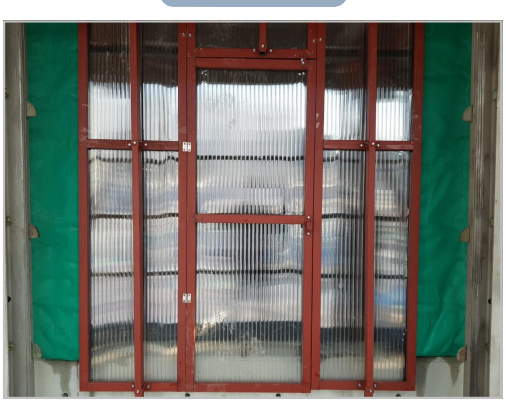

소음방지 패널

⑥ 창호, 도장공사 등

- 조적, 미장, 창호, 단열, 방수, 타일, 천장공사, 도장, 도배, 바닥마감 등

창호 설치

바닥 마감공사

조적

도색

⑦ 조경공사

- 외부 경관 조경공사 등

조경수 식재

과속방지턱 설치

부록

## 2. 주요 건설기계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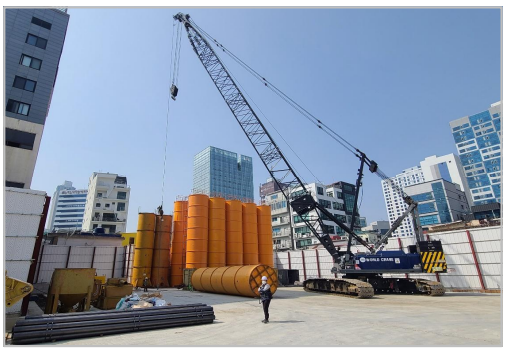

① **크레인:**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거나 수평으로 나르는 기계

② **페이로더:** 대형 블레이더나 동력삽을 앞에 탑재한 굴착기로 골재 등을 퍼올려 이동 후 트럭이나 적재소로 옮기는 장비

③ **콤비로울러:** 흙, 자갈, 모래등을 강력한 진동으로 평평하고 단단하게 다져주는 기계로 바닥다짐작업이나 아스팔트 포장시 활용되는 장비

④ **어스오거:** 나사형의 긴 축을 모터 등에 의해 땅 속에 돌려 박아 구멍을 뚫는 기계(축 전체가 나사형인 것은 연속 스크루식, 선단만 나사형인 것은 오거스크루식)

⑤ **유압브레이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재료를 관통하기 위해 균일한 동력, 내구성, 파단력을 제공하는 기계

⑥ **불도저:** 금속 날이 장착된 무한궤도 트렉터로 도로건설, 농경, 건축, 철거 등을 할 때 흙이나 바위를 밀어내는 작업에 효과적인 장비

⑦ **트렌처:** 여러개의 굴착용 버킷을 부착시키고 주행하면서 도랑을 파는 기계

⑧ **레미콘믹서차량:** 콘크리트를 섞은 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동안 재료의 질을 균등하게 하고 굳는 걸 방지하기 위해 휘저어 섞는 기계

⑨ **모터 그레이더:** 땅바닥을 깎아 판판하게 고르거나 눈을 치우는 데 쓰는 토목 건설 기계

⑩ **항타기:** 기초 공사에서 해머나 동력을 사용해 강관파일이나 콘크리트 파일, 시트파일 등을 땅에 박는 기계

## 3. 건설공사 용어

**성토:** 종전의 지반 위에 다시 흙을 돋우어 쌓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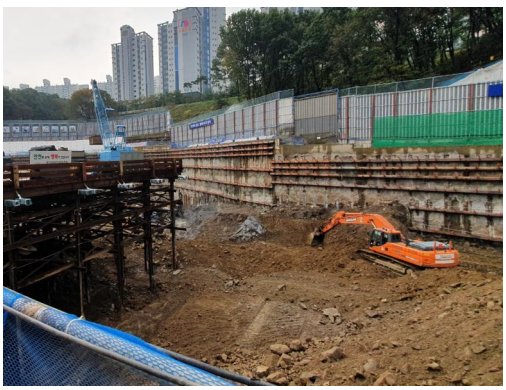

**절토:**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터파기:** 구조물 건설 시 기반을 닦기 위해 흙을 파내는 작업

**골조:** 건물의 주된 뼈대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후 굳기 전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부재

**비계:** 건설, 건축 등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가설 발판이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사람이나 장비, 자재 등을 올려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시설물

**흙막이:** 높은 곳의 흙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막거나 건물의 지하를 팔 때 생기는 흙의 압력 때문에 건물 주변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설치하는 구조물

**앵커공법:** 붕괴 우려가 있는 경사면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흙막이 뒷면의 흙 속에 보조 장치를 설치하는 공법

**갱폼:** 평면상 상 · 하부가 동일한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하여 조립과 분해를 반복하지 않으며 한 번에 설치하고 해체하는 대형 거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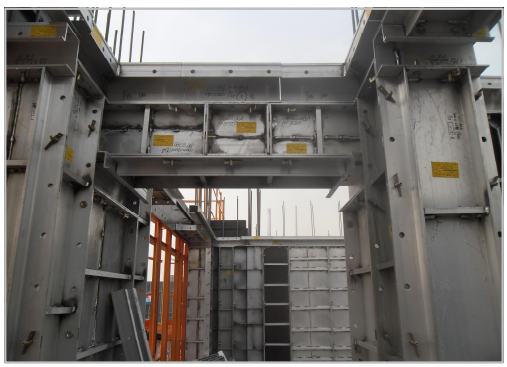

**알폼(알루미늄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거푸집

**거푸집:**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나 크기로 만들기 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원하는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양생 및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건물을 지을 때 구조물의 거푸집과 같은 빈 공간에 콘크리트 따위를 부어 넣음

**파일(말뚝):** 기초공사를 위해 박는 말뚝으로 콘크리트파일, 시트파일, 강관파일, PHC파일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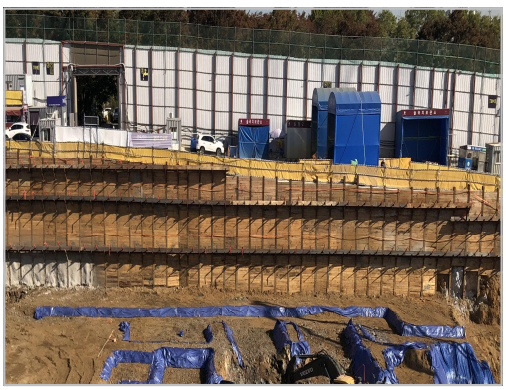

**토류판:** 'H' 자 모양으로 된 빔을 땅에 박고 파 내려갈 때 아래 철골 사이에 끼우는 흙막이용 두꺼운 판자

**T타워크레인:** 탑 위에 선회하는 기계대를 싣고 고층 건축에 사용되는 기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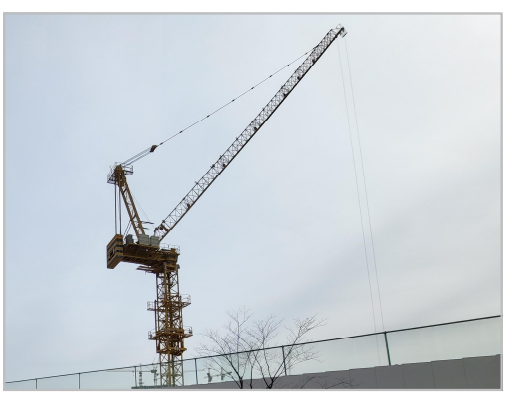

**L(러핑)타워크레인:** 상하로 움직여 고층 건축에 사용되는 기중기로 고공권 침해를 줄임

**건설용리프트:** 건설자재 등을 운반하기 위해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설비 장치

**보강토옹벽:** 콘크리트블록에 섬유보강재를 끼워 펼쳐 흙을 채워 자중, 마찰력 등으로 붕괴를 방지하도록 만든 옹벽

**가설울타리:** 작업장의 비산먼지를 차단하고 가설재의 용도로 사용하며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울타리

**세륜 시설:** 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어 비산먼지 등을 줄이는 시설

**아스콘포장:** 도로포장의 대표적 포장방법으로 아스콘을 고온, 고압으로 롤러 등으로 압착하여 시공하고 학교에는 주차장 및 진출입로에 주로 사용

**미끄럼방지포장:** 아스콘포장의 상부에 아크릴 등의 재질로 도막을 입혀 보행안정성, 노후화, 부식 등을 개선하는 포장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등에 주로 사용

※ **출처:** 하정화 외, 『교육환경평가의 이해(기존학교)』, 경상남도교육청(2022.12), 58~67p

## 집 필 진


| 과제책임자 | 임홍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참 여 진 | 김진희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박경훈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고정훈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김선유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강은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자 문 관 | 최경훈 (서울특별시교육청)

박금분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영미 (충청남도교육청)

이아름 (경상남도교육청)

| 협 력 관 | 나광필 (교육부)

박형민 (교육부)

#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안내서


발 행 2023년 7월

발 행 인 조 명 연

발 행 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247-4 3, 4층
전화 : (043) 710-4000
팩스 : (043) 710-4004
http://www.schoolkeepa.or.kr)



*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비매품)